

# 헌법재판소공보

제340호

2025년 2월 20일(목요일)

헌법재판소사무처 (1)

## — 목 차 —

### 법 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43호) .....	5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45호) .....	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60호) .....	5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69호) .....	56

### 내 규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내규 일부개정내규(헌법재판소내규 제292호) .....	57
---	----

### 인 사

### 공지사항

주요업무일지 .....	59
심판사건통계표 .....	61
등록도서현황 .....	63
주요신착도서 .....	63
- 2025년도 1월 구입도서 .....	63
- 2025년도 1월 교환도서 .....	63

### 공 고

헌법재판소공고 제2025-6호(2024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표) .....	65
---	----

###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 판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 03060      대표전화 (02)708-3456      <https://www.ccourt.go.kr>

◆ 소리로 읽는 공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우측 상단).

# 법 률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43호)  
2025. 1. 7.)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3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 이수 및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5조 및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은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병무청장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시업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45호) 2025. 1. 7.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2의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 2023. 3. 23.) 취지를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비업자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경비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60호) 2025. 1. 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제60조제1항제5호

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으로 한다.

제1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천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라목 중 “제162조제4항”을 “제162조제5항”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1호 중 “제162조제3항”을 “제162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를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헌가14, 2024. 1. 25.)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직원을 제외하는 한편,

사전투표소마다 최대 8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두도록 하는 등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거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거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거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내 규

○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내규 일부개정내규

(헌법재판소내규 제292호) 2025. 1. 21.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란, 행정주사·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	16
행정주사·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급)	2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예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변동사항(6급 1명 → 5급 1명)을 반영하려는 것임.

인 사

○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 2025. 1. 6.

사무차장 김 용 호

명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위원

(2025. 1. 6. ~ 2026. 1. 5.)

○ 헌법연구관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2025. 1. 8.

재판관 이 미 선

명 헌법연구관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

재판관 정 정 미

명 헌법연구관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

재판관 정 형 식

명 헌법연구관 징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문 형 배

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재판관 정 계 선

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 2025. 1. 21.

前 도서심의관 이 성 환

명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사무차장 김 용 호

도서총괄심의관 김 인 숙

명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위원

(2025. 1. 21. ~ 2027. 1. 20.)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 2025. 2. 1.

前 기획심의관 이 진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획심의관 남 상 규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신규채용

- 2025. 1. 6.

김 성 태

임 청원경찰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 2025. 1. 13.

이 미 은

임 전산주사보

명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김 형 기

임 전기주사보 시보

명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 2025. 1. 16.

서울특별시청  
지방행정주사보 박 경 령

임 행정주사보

명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 2025. 1. 25.

문 정 희

임 보안서기보(일반임기제)

명 행정관리국 총무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2025. 1. 25. ~ 2027. 1. 24.)

- 2025. 2. 1.

이 기 원  
최 예 진  
정 한 비  
임 주 미

임 헌법연구관보

○ 전 입

- 2025. 1. 20.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주사보 이 현 중

명 헌법재판소 전임

명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 연 입

- 2025. 2. 1.

선임헌법연구관 우 승 아

선임헌법연구관 박 준 희

헌법연구관 정 치 언

연임 헌법연구관

(2025. 2. 1. ~ 2035. 1. 31.)

○ 전 보

- 2025. 1. 16.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행정주사 양 지 은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국제과 지원근무

- 2025. 2. 1.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박 대 규

면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선임헌법연구관 이 진

면 기획심의관 겸임근무

면 국제심의관 겸임근무

면 정보화심의관 겸임근무

선임헌법연구관 박 세 영

명 대법원 파견근무 복귀

보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남 상 규

명 국회 파견근무 복귀

명 기획심의관 겸임근무

명 국제심의관 겸임근무

명 정보화심의관 겸임근무

헌법연구관 이 건 석

임 선임헌법연구관

○ 파 견

- 2025. 2. 1.

헌법연구관 이 재 강

명 국회 파견근무

(2025. 2. 1. ~ 2026. 1. 31.)

헌법연구관 정 치 언

명 대법원 파견근무

(2025. 2. 1. ~ 2026. 1. 31.)



○ 휴 직

- 2025. 2. 3.  
행정관리국 총무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보안서기 윤진열  
명 헌법재판소사무처  
명 육아휴직  
(2025. 2. 3. ~ 2025. 5. 2.)

공 지 사 항

○ 주요업무일지

<2025년 1월>

- 1. 2.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지정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의결안
- 1. 3. 준비절차기일  
-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1. 6.~1. 10.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하는 교원 직무  
연수」 제1기 실시  
- 연수기간: 1. 6.(월)~1. 10.(금) (5일, 원격)  
- 연수대상: 40명 (초·중등 교원 등)  
- 연수내용: 헌법이론 및헌법재판  
이해 등
- 1. 8. 준비절차기일  
- 사건: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 1. 9.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2025. 1. 9.(목) 15:00  
- 장 소: 헌법재판연구원 5층 대회의실  
- 심의안건: 2025년 연구기본계획안(제1호)  
및 교육기본계획안(제2호)
- 1. 13. 준비절차기일  
- 사건: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제1기  
실시

- 교육기간: 1. 13.(월) ~ 1. 24.(금) (10일,  
원격)
- 교육대상: 56명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
- 교육내용: 헌법재판실무, 청구서 및 의견서  
작성, 토론 등
- 「해외 로스쿨생 교육실무연수」 실시  
- 연수기간: 1. 13.(월)~2. 28.(금) (4~7주)  
- 연수대상: 3명  
- 연수내용: 헌법재판 관련 외국사례 조사,  
연구과제 수행 등

- 1. 14. 변론  
-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1. 15. 변론  
- 사건: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 1. 16. 변론  
-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1. 20.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추진  
- 예심서면 제출: 1. 13.(월) 18:00까지  
- 예심서면 심사: 1. 20.(월)  
- 본선 진출팀 발표: 2025. 1. 21.(화)  
※ 경연대회 본심: 2025. 2. 7.(금)
- 1. 21. 변론  
-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 1. 22. 준비절차기일  
- 사건: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변론  
- 사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재판관회의 개최  
- 안건: 헌법연구관 연임안  
헌법연구관 임용안  
헌법연구관보 임용안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제1호(통권 제70호) 발간

- 발간일: 1. 22.(수)

- 내 용: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통권 제70호)를 발간·배포하여 재판소, 국회 등 유관기관과 연구·조사 성과물 공유

1. 23. 변론

-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결과: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등 총 50건

- 헌법불합치 1, 인용 4, 합헌 12, 기각 24, 각하 9

1. 1. ~ 1. 31.

홈페이지 운영현황

- 접속건수: 7,652,177건

(누적통계: 22,570,876건)





○ 심판사건통계표

<b>심판사건총괄표</b>																
2025. 1.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 취 하 계	
	합 계	전달 (년) 미 제	이달 (년) 접 수	합 계	결 정									취 하		
					계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기 하 타			
1 월 계	합 계	1,602	1,401	201	200	198 <1>		1 <1>			4	12	24	157 (148)	2	1,402
	위헌법률	45	43	2	3	3						3				42
	탄 핵	10	10		1	1							1			9
	정당해산															
	권한쟁의	18	15	3	1										1	17
	헌 법 소 원	계	1,529	1,333	196	195	194 <1>		1 <1>		4	9	23	157 (148)	1	1,334
	§68①	946	819	127	143	142 <1>		1 <1>		4		23	114 (105)	1	803	
	§68②	583	514	69	52	52					9		43 (43)		531	
금 년 누 계	합 계	1,602	1,401	201	200	198 <1>		1 <1>			4	12	24	157 (148)	2	1,402
	위헌법률	45	43	2	3	3						3				42
	탄 핵	10	10		1	1							1			9
	정당해산															
	권한쟁의	18	15	3	1										1	17
	헌 법 소 원	계	1,529	1,333	196	195	194 <1>		1 <1>		4	9	23	157 (148)	1	1,334
	§68①	946	819	127	143	142 <1>		1 <1>		4		23	114 (105)	1	803	
	§68②	583	514	69	52	52					9		43 (43)		531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심판사건누계표

1988. 9. 1. - 2025. 1. 31. 현재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합계	52,585	51,183	49,956 <856>	781 <528>	326 <246>	70 <53>	28 <29>	968	3,531	9,027	35,213 (32,758)	12	1,227	1,402	
위헌법률	1,134	1,092	962 <410>	356 <302>	104 <81>	18 <13>	7 <14>		396		81		130	42	
탄핵	16	7	7					1		5	1			9	
정당해산	2	2	2					1			1				
권한쟁의	144	127	107					23		31	52	1	20	17	
헌법소원	계	51,289	49,955	48,878 <446>	425 <226>	222 <165>	52 <40>	21 <15>	943	3,135	8,991	35,078 (32,758)	11	1,077	1,334
	§68①	40,447	39,644	38,733 <213>	132 <120>	97 <77>	20 <16>		943	20	8,991	28,522 (26,679)	8	911	803
	§68②	10,842	10,311	10,145 <233>	293 <106>	125 <88>	32 <24>	21 <15>		3,115		6,556 (6,079)	3	166	531

※ 주

1. 결정란의 < >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숫자임.
2. 헌법소원심판사건 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3. 법령에 대한 §68①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분류 하였음.



○ 등록도서현황

(2025. 1. 31. 현재, 단위: 권)

구 분		합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동 양	서 양
2024년 말 누계		192,503	89,255	103,248	38,758	64,490
2025년	전월 말 누계	-	-	-	-	-
	1월	700	304	396	126	270
	소 계	700	304	396	126	270
총 계		193,203	89,559	103,644	38,884	64,760

○ 주요신착도서

- 2025년도 1월 구입도서

【국 내】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법 원 행 정 처	사 법 발 전 재 단	2023
• 헌법학	성 낙 인	법 문 사	2024

【독 일】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Die Straftat und ihr Aufbau. Mit Ebook: Lehrbuch & Entscheidungen	Johannes Wessels; Werner Beulke; Helmut Satzger	C.F. Müller	2024
• Strafsachen im Internet	Klaus Malek; Andreas Popp; Diana Nadeborn	C.F. Müller	2024

- 2025년도 1월 교환도서

- 교 환 처: 일본 긴기(近畿)대학교
- 교환일자: 2024. 12. 27.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近畿大學 法學 vol.72 no.1/2/3	近畿大學法學會	近畿大學法學會	2024

- 교 환 처: 일본 변호사연합회
- 교환일자: 2025. 1. 2.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NIBEN Frontier vol.239	第二東京弁護士會	第二東京弁護士會	2024

- 교 환 처: 일본 오사카(大阪)대학교
- 교환일자: 2025. 1. 24.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阪大法學 vol.74 no.3/4	大阪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大阪大學大學院 法學研究科	2024

- 교 환 처: 미국 미시건대학교
- 교환일자: 2025. 1. 24.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연도
• Michigan Law Review vol.123 no.1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4



**공 고**

**㉠ 헌법재판소공고 제2025-6호(2024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헌법재판소 정보 공개 운영실태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2024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운영실태**

(2024. 1. 1. ~ 12. 31.)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도 서 관	기 타
1	-	1	-	-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681	60	58	2	-	-	621*

\* 반복청구 등으로 인한 종결처리(565건), 정보 부존재(12건), 진정·질의에 대한 회신(34건), 취하(4건), 타기관 이송(6건)

나. 청구방법별 현황

청구건수	직접방문	우 편	팩 스	정보통신망
681	558	63	-	60

다. 공개방법별 현황

공개 건수	공 개 방 법						수 령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60	60	-	48	12	-	-	60	4	44	-	12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계	당일(즉시)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60	-	60	-	-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1.5.	1.5.	
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1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1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0.	1.10.	
1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1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1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1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1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6.	1.16.	
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2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2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2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30	1. 법무장관 부채시 법무행정의 권한 대행 2. 법무장관 부채시 법무행정의 법적책임자	사본	심판 민원과, 심판 지원 총괄과	이송			1.12.	1.12.	
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해당 결정문 사본		1.19.	1.19.	사본
3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3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9.	1.19.		
3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3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3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3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3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3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30.	1.30.	
4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4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5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52	호적부의 확인	열람	심판 민원과	이송			1.26.	1.26.	
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5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5.	1.25.	
57	헌법재판소의 2022년 이후 1. 업무분장표(접수, 서무, 입력, 재판관련부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2. 각 재판관들 취임연도, 성함, 전직명칭 3. 각 재판관들 추천기관(대법원, 국회, 대통령등) 4. 헌법재판소 각 예규·규칙등 목록	사본	법제과, 심판 민원과	공개	1. 헌법재판소 조직도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7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약력(9장) 3.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 현황(1장) 4. 헌법재판소소관규칙·내규목록(4장)		26.	26.	사본
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5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6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6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62	소급입법 관련 질의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1.30.	1.30.	
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6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6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해당 결정문 사본		2.2.	2.2.	사본	
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67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 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문 사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2.8.		2.8.
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		2.2.
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8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8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해당 동영상 파일		2.15.	2.15.	전자 파일
8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8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8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8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88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관계 관련 사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2.15.	2.15.	
89	2014. 11. 25. 통합진보당 해산심판(2013헌다1) 최종변론 동영상 공개 청구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2.14.	2.14.	
9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15.	2.15.	
9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0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0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4	청구인이 기재한 사항 관련 법문내용 교정 및 법문 내용 존재 확인 정보 공개 청구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2.23.	2.23.	
11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1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1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2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2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2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23.	2.23.	
123	1.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위헌심판청구 승소 사례 2.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승소 사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사건 목록 2. 해당사항없음		2.27.	2.27.	사본
12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2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28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5.	3.5.	사본
12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3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33	2000년 1월~2024년 2월간 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 법소원 사건 중 절도 사건 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한다라는 헌법 소원 인용 결정문을 받아 보고자 그에 따른 해당 사 건에 대한 사건번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사건 목록		3.7.	3.7.	사본
134	헌법 조문 관련 질의	사본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3.6.	3.6.	
135	행정심판사건 관련 질의	사본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3.6.	3.6.	
136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12.	3.12.	사본
13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3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3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4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4.	3.4.	
141	심판사건의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7.	3.7.	
142	1. 사회보호법(보호감호) 위헌 판결문 2. 사회보호법 위헌판결문 중 보상금지급 관련 내용 3. 부산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판결문내용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2. 해당 결정문(88헌가 5등) 사본(25장) 3. 해당사건없음		3.13.	3.13.	사본
14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4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4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4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4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4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4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2.	3.12.	
159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22.	3.22.	사본
16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6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6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64	심판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4.	3.14.	
165	헌법소원 낸 정보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접수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진행상황		3.14.	3.14.	사본
1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6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70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26.	3.26.	사본
171	대통령 퇴임예정일	사본	심판 민원과	이송			3.18.	3.18.	
1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7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7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7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19.	3.19.	
176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3.29.	3.29.	사본
17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7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8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8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9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9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9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3.28.	3.28.	
19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19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19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19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19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19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1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0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1	1.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에 서 사회보호법(보호감호)이 위헌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 내용 2. 사회보호법(보호감호)이 위헌으로 판결한 즉시 또는 시일 또는 년도가 변경된 이후에 사회보호 법에 의한 강제로 피해 를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4.4.	4.4.	사본
20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0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4.	4.4.	
210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4.16.	4.16.	사본
2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1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19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4.11.	4.11.	
220	심판지원실장 공무원증 뒷면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4.16.	4.16.	
221	1. 위헌결정내역 2. 위헌결정·판결 중에 ‘준강간미수’와 관련된 결정문 혹은 판결문(2020.1.1.~2024.4.9.) 3. ‘피의자진술조서’가 없는 상태에서(형사재판) 유죄판결 선고시 ‘위헌’결정된 사건결정문 혹은 유사사건 결정문 및 사건번호(2020.1.1.~2024.4.9.)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위헌으로 선고된 사건 목록 2. 정보부존재 3. 정보부존재		4.24.	4.24.	사본
222	1. 심판사건의 결정문 2. 재판관 서명 관련 질의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결정문 사본 2. 민원답변		4.19.	4.19.	사본
22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2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15.	4.15.	
227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4.17.	4.17.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28	헌법재판소장의 행사 소요 비용	전자 파일	인사과	공개	해당 자료		4.25.	4.25.	전자 파일
22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3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1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4.19.	4.19.	
24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6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4.22.	4.2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47	심판사건의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4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5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4.23.	4.23.	
25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5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6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해당 결정문 사본		5.3.	5.3.	사본
2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68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5.10.	5.10.	
2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7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7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3.	5.3.	
27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7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7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7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7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7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8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8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8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14.	5.14.	
285	검역본부 관련 문서확인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취하			5.9.	5.9.	
286	검역본부 관련 문서확인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5.20.	5.20.	
287	1.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청구소송 절차, 전반적인 헌법소원청구절차 안내문 2. 구속 시 헌법재판소 지원 국선보조 기능 변호사 명단 목록, 헌법재판소의 현재 소송 국선 변호사 정보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안내 책자 2. 2024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		5.22.	5.22.	사본
28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8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9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9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92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5.23.	5.23.	사본
293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 안내문 및 세부사항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안내 책자		5.22.	5.22.	사본
294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5.16.	5.16.	사본
29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9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9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29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30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30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30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1.	5.21.	
30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0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0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0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0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0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0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5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5.28.	5.28.	
316	교정 관련 국제규칙	사본	심판 민원과	부존재			6.3.	6.3.	
31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1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1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1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6.11.	6.11.	사본
322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6.14.	6.14.	사본
32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2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3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4	6.4	
3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3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3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35	법원 사건 판결문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취하			6.5.	6.5.	
336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관계 관련 사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6.14.	6.14.	
33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3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3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1	1. 심판사건의 청구서 2.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열람복사 신청 안내 2. 해당결정문사본		6.17.	6.17.	사본
34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4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14.	6.14.	
350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 관련 자료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헌법불합치결정 조항 법령 개정 현황		6.25.	6.25.	
3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5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5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3	위헌결정 목록표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6.25.	6.25.	사본
36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6.24.	6.24.	
3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7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6	경찰 수사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이송			7.4	7.4	
37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8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8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8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	7.2	
38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8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8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8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8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39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11.	7.11.	
397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7.16.	7.16.	사본
398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7.23.	7.23.	사본
3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3	경찰 수사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이송			7.17.	7.17.	
40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40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22.	7.2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08	교정시설 관련 위헌결정 내역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사건 목록		7.25.	7.25.	사본
409	심판사건의 열람	열람	심판 민원과	종결			7.19.	7.19.	
41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18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8.6.	8.6.	사본
41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3	심판사건의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4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사실 확인	사본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8.1.	8.1.	
4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2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해당 자료		7.30.	7.30.	전자 파일
42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7.30.	7.30.		
42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3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업무기능 등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8.8.	8.8.		
434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상황 문의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8.8.	8.8.		
43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8.	8.8.		
43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일련 번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4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해당 결정문 사본		8.20.	8.20.	사본
44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7	교정시설 관련 위헌결정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8.22.	8.22.	
44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4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0.	8.20.	
4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5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5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0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8.28.	8.28.	
46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7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7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8.27.	8.27.	
473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9.4.	9.4.	사본
47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7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7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7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78	1. 결정문 2. 2001년~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비매품책자 및 결정판례집 등 발간한 목록 3. 청사 층별 배치도	사본	법제과, 심판 지원 총괄과,	공개	1. 해당 결정문 사본 2. 주요연속간행물목록 3. 청사 층별 배치도 4. 직렬별, 급수별 직원 현 인원수		9.11.	9.11.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 직렬별, 급수별 직원 현 인원수 5. 관용차량현황 6. 헌법재판소소관 법률, 훈령, 예규, 규칙, 고시 등 목록 7. 행심위위원회성명·직위 8. 2001년~현재까지 연도별 헌법소원 통계현황(접수건수, 인용, 기각, 각하 등) 9. 부서별 위임진결표 10. 사무배치표 11. 헌법재판소 행심위2013년 ~현재까지 연도별 접수 건수와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등 통계자료 12. 2024년예산편성내역		심판 민원과, 총무과, 인사과, 청사 관리과		5. 관용차량현황 6. 헌법재판소 소관 규정목록 7.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 심판위원회위원 성명· 직위 8. 연도별심판사건접수 및 처리현황표 9. 헌법재판소위임진결사항표 10. 헌법재판소조직도 11.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 심판위원회통계자료 12. 2024년도세출예산편성 내역				
4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8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6.	9.6.	
483	1. '구속'으로 검색되는 헌법 재판소 판례 2. '신체의자유', '기본권침해'로 검색되는 헌법재판소판례 3. '스토킹'으로 검색되는 헌법 재판소판례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자료		9.11.	9.11.	사본
484	1. 2020년도 5월부터 2024년도 8월까지 인용, 각하 결정된 판례 2. 2020년도 5월부터 2024년도 8월 까지 법인카드사용 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심판 민원과, 총무과	부분 공개	1. 인용 또는 각하 판례 목 록 2.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재판활동 관 련 사용건에 대한 영수증: 진행 중인 재 판사항	10.4.	10.4.	사본
485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관계 관련 사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9.11.	9.11.	전자 파일
48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48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8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8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0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취하			9.9.	9.9.	
49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5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공개	지정재판부 구성 현황		9.24.	9.24.	전자 파일
496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9.25.	9.25.	사본
49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4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50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9.13.	9.13.	
501	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사본	심판 민원과, 총무과	종결			9.14.	9.14.	
502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0.8.	10.8.	사본
50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0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0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0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07	심판사건 관련 국선번호사 수입료	전자 파일	심판 사무과	공개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기준		10.10.	10.10.	전자 파일
50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0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2	통합진보당 당원명단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10.10.	10.10.	
5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7	1. 심판사건의 결정문 2. 심판사건의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해당 결정문 사본 2. 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안내		10.15.	10.15.	사본
51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1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2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52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7.	10.7.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22	검찰 수사기록	전자 파일	심판 사무과	이송			10.15.	10.15.	
52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2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27	심판사건의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4.	10.14.	
52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2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3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18.	10.18.	
5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3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3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3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규정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36	내용증명서에 첨부된 사건 번호가 귀소에 존재했었던 사건인지, 또한 위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인지 여부	사본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10.22.	10.22.	
537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0.17.	10.17.	사본
538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관계 관련 사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존재			10.22.	10.22.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39	기록물 보존, 복원 현황	전자 파일	심판 지원 총괄과	공개	해당 자료		10.25.	10.25.	전자 파일
540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관계 관련 사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10.23.	10.23.	
54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4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4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4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2.	10.22.	
54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4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4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4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49	심판사건의 결정문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10.24.	10.24.	
550	심판사건의 기록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29.	10.29.	사본
55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5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5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5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0.31.	10.31.	
55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5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5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5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59	1. 2020년~2024년 10월(10월의 집계기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9월 기준)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을 연도별, 재판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 2. 2020년~2023년 5월(엔데믹 선언직전) 사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정책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에 대한 평균사건처리기간에 대한 자료 3. 202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요구자료 중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처리기간 및 장기미제 관련한 자료 일체 4. 2020년~2024년까지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기간 지연의 원인으로 인한 민원현황(민원횟수, 민원분야등) 5.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기간 지연에 관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 내외부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용역결과 등 일체의 자료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심판 사무과	공개	해당 자료		11.8.	11.8.	전자 파일
560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1.6.	11.6.	사본
561	헌법재판소를 안내하고 헌법소원 관련해서 양식이 있는 책자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안내 책자		11.6.	11.6.	사본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6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7.	11.7.	
570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취하			11.6.	11.6.	
571	심판사건의 기록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11.11.	11.11.	
57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15.	11.15.	
5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8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8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84	1. 2022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 2022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발간자료 사본		11.27.	11.27.	사본
585	1. 헌법재판소 판례집 9권 1집 2.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목록 3.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목록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 1집 2. 주요연속간행물목록 3. 정보부존재		11.27.	11.27.	사본
58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8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8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8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1.	11.21.	
590	1. 청구인이 개명전 ○○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각 사건번호 2. 위 1항의 각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사본 3. 위 1항의 각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서 사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1. 청구인 ○○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목록 2. 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안내 3. 해당결정문사본		11.28.	11.28.	사본
591	헌법재판소 결정례집 33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3권 1집 및 2집		11.28.	11.28.	사본
59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59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59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59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59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59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59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59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60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60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60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60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1.28.	11.28.	
60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0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0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0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08	청사 증축공사의 건축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 중요도계수와 내진등급	전자 파일	청사 관리과	부존재			12.9.	12.9.	
6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관련 질의	사본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12.6.	12.6.	
61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61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6.	12.6.	
618	현재 2012.11.23.선고 2011헌마123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12.	12.12.	사본
619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12.	12.12.	사본
62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9.	12.9.	
628	반송된 우편물의 표지	사본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12.16.	12.16.	
629	1. 헌법재판관 임명 현황 및 공석 기간	전자 파일	인사과	공개	1, 2. 해당 자료 3.정보부존재		12.26.	12.26.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 헌법재판관 임명일과 임기 만료일 3. 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축 구문건 4.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아 니한 사안에 대한 검토문건				4.정보부존재				
63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6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7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38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사건 등 목록	전자 파일	인사과	공개	해당 자료		12.26.	12.26.	
639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0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1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2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3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기타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치 리 사 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644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5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6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7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8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열람 · 시청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49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0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1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2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열람 · 시청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3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4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5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656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7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8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59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60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기타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61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62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19.	12.19.	
663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19.	12.19.	
664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19.	12.19.	
665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19.	12.19.	
666	대통령 탄핵심판 중계 요청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진정 질의			12.26.	12.26.	
667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26.	12.26.	사본
66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6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7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67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12.20.	12.20.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672	2011헌바246 관련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12.30.	12.30.	
673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관련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부분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재판관 회의 및 평의 관련 자료: 헌법재 판소법 제34 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비 공개	12.29.	12.29.	전자 파일
674	심판사건의 결정문	사본	심판 민원과	공개	해당 결정문 사본		12.30.	12.30.	사본
675	1. 평상시 헌법재판소에 출입 하는 전체 기자 숫자 2. 소속매체 목록(탄핵심판 등으로 일시 출입하는 기 자단 제외)	전자 파일	홍보 담당 관실	공개	해당 답변서		12.30.	12.30.	
676	청구인이 기재한 사실관계 관련 사항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종결			12.29.	12.29.	
677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관련 진정	전자 파일	심판 민원과	진정 질의			12.30.	12.30.	
678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5.1.8.	25.1.8.	
679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5.1.8.	25.1.8.	
680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5.1.8.	25.1.8.	
681	첨부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발송 관련 문서 일체	사본	심판 민원과	종결			25.1.8.	25.1.8.	

4. 비공개사유별 현황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0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헌법소원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신청문의: 심판민원과 02-708-3460





判 例

이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약어 사용례

- 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
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
공보 23, 602 .....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

【자료편찬과 ☎ 02-708-3865】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 112

[2025. 1. 23. 2021헌가35]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 119

[2025. 1. 23. 2024헌나1]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4인의 재판관이 각각의견, 4인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으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례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 136

[2025. 1. 23. 2019헌바317]

가.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권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1)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선동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2) 가입선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143

[2025. 1. 23. 2020헌바510]

가.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이하 '사업시행자조항'이라 한다)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이하 '비공원시설조항'이라 한다)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 149

[2025. 1. 23. 2021헌바10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 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 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 부(소극)

6.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152

[2025. 1. 23. 2021헌바268]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 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농 협법 제49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 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 155

[2025. 1. 23. 2022헌바61]

일정한 범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 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 칩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159

[2025. 1. 23. 2021헌마653]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 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 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 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 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 사업’에 관한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 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해당 부

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 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 163

[2025. 1. 23. 2021헌마806]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 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 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 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 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 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 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171

[2025. 1. 23. 2021헌마853-1294(병합)]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 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 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 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1.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77

[2025. 1. 23. 2021헌마886]

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 183

[2025. 1. 23. 2021헌마1192]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AI 발생 기간에 오리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AI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 193

[2025. 1. 23. 2021헌마1194]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이하 '입식제한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입식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2025. 1. 23. 2021헌가35]

#### 【판시사항】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인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도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각 제재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

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 추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제3호, 제3항, 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915 수행배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주 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해 사건 원고인 ○○ 주식회사(이하 ‘○○’이



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이라 한다) 산하 ○○진흥원과 사이에, ‘2018년 ○○사업(○○ 장비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77,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사업(○○ 장비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국고보조금 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두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2018년 3월에 완료한 □□진흥원의 연구 과제,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의 연구 과제와 동일한 연구 과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였고, 카탈로그, 동영상, 재료비 등의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사건을 과기부장관에게 이첩하였다. 이에 과기부장관이 ○○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은 위 이첩 내용과 같이 이미 수행이 완료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각 사업에 참여하였고 참여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재료비와 홍보동영상 제작비 등의 증빙서류를 중복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라. ○○진흥원장은 2020. 7. 16. ○○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국고보조금 134,300,000원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고, ○○은 2020. 8. 5.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

마. 과기부장관은 ○○이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환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2021. 3. 18. ○○에 대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등에 따라 4년 6개월 동안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을 하였다.

바. ○○은 2021. 3. 25.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위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915), 제청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0.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연혁과 상관없이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배제사유 못지않게 배제기간 역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기간의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수범자에 의한 예측가능성 및 국가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모든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로써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구체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직업의 선택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직업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행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향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보조금수령자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바99;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참조).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할 기간을 특정하거나 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대상 배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 자체로 명확한바, 제청법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수행대상 배제기간의 정함이 없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보조금수령자는 향후 원천적으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조금수령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에 관한 구체적 방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대상 배

제처분의 근거규정일 뿐 위임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제2조 제4호)을 말하며(이하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합하여 ‘보조금 등’이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대표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참조). 국가는 민간경제의 활성화, 고용촉진, 각종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간접보조금 형식으로 재교부하기도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는 이를 반대급부 없이 또다시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보조금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 2018년 이래로 매해 본예산의 약 15~17% 수준을 유지하여 왔고, 2024년에도 총지출(본예산 기준) 656.6조 원 중 보조금은 109.1조 원으로서 이는 본예산의 약 16.6%에 달한다. 위와 같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경제·생활의 안정화 등을 위한 국가 재정사업의 확대, 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보조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가 애초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의도하였던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이 낭비되는바, 이는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당사자만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공익과 관련하여서도 커다란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재차 부정 수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간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즉 보조금 부정 수급은 일종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이로 인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만연해 온 실태 및 보조금 교부를 통한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피해의 최소화

(가) 필요적 제재로 규정하면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지 여부

1) 심판대상조항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고 그 배제기간의 상한도 두고 있지 않다.

2)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왔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제재를 통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가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단 1회만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가법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수령자를 보조

사업의 수행에서 필요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로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량에 따라 수행 대상 배제 여부를 달리할 경우 그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임의적 제재가 아닌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구 보조금법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는 2013년 8월경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를 통해 약 2,300억 원의 복직제정 누수가 적발되고 2014년 1월경 검·경 합동조사 등을 통해 약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연달아 드러나자, 정부가 2014. 12. 4.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목적으로 ‘고의로 부정 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One-Strike Out)’를 내세우면서 신설된 것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의 경우 ‘직접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고액이 수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 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고 피해사실 또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환수당하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보조금수령자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일단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역에 보조금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게 하고, 보조금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경제적·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법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상 살펴 본 수행 대상 배제제도의 도입 경위, 보조금 부정 수급의 폐해, 보조금의 속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

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수행 대상 배제라는 제재처분을 도입하면서 그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필요적 제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수행 대상 배제처분만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보조금수령자의 비위의 정도,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부정 수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그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서도 수행 대상 배제기간을 특정하여 수행 대상 배제처분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당해 사건의 피고인 과기부장관도 원고인 ○○에 대하여 4년 6개월 동안의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하였다.

보조금수령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구 보조금법 제37조 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3조 참조), 구 보조금법에는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5) 한편, 보조금법이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 보조금법 시행 이후부터는 심판대상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폐지하면서도 ‘보조금 등 지급 제한’이라는 제재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제재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수령자와 달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등 지급 제한 제도는 모두 유지하면서 그 제재기간의 상한 역시 5년으로 정하였다.

당초 구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 등’이라 한다)의 수행 상황 보고 의무, 보조사업 등 실적보고 의무와 같은 각종 의무조항들(제22조, 제25조, 제27조 등)을 둔 것과는 달리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제재 조항들(제31조의2,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

의2, 제40조 등)의 적용대상으로만 삼음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간에 규율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보조금수령자의 경우 보조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지,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인 보조사업 등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것은 아니어서 굳이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향후 원천적으로 수행 대상 배제처분까지 할 실익이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보다는 ‘일정 범위의 기간 동안의 보조금 등 지급 제한’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구 보조금법 내 규율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를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서(제3조 참조), 입법자는 개별 보조금 관련 법률들에서 부정 수급 관련 제재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할 경우 법적용상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보조금법에서 제재기간과 관련한 적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1. 6. 15.자 보조금법 개정이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행 대상 배제를 필요적 제재로 규정하면서 수행 대상 배제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

1) 보조금수령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어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하면서 그 소관사업 중 그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수행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과 보조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공익에 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소관사업 중 일부 분야의 수행 대상에서만 배제할 경우 수행 대상 배제로 인한 불이





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감소함으로써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모든 소관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어서, 수행 대상 배제로 인하여 보조금수령자가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거나 막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직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어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그 보조금수령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한 제재의 효과나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항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다)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지 여부 및 수행 대상 배제처분이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다른 제재수단들과 중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지 여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일 수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도(제33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도 두고 있으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통해 보조금수령자가 취득한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제재부가금 등의 부과액에 비하여 클 경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조금수령자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억제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보조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도(제36조의2 제1항 제3호) 및 형벌(제40조 제1호)과 같은 제재장치도 두고 있으나, 명단 공표 그 자체만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여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형벌도 심판대상조항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역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보조금법상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명단 공표 및 형벌이라는 제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행 대상 배제처분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만일 수 개의 제재조치가 중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조금수령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부가금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반환 대상인 보조금 등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인데, 만일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급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또한 명단 공표 여부는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데, 명단 등의 공표는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게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공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6조

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4항 참조).

그리고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40조 제1호), 징역형의 경우 그 상한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죄질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의 경우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제43조 참조).

따라서 수행 대상 배제처분과 함께 위와 같은 제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의 총합이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반드시 과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금수령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수행 대상 배제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보조금 교부 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고, 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6. 15. 법률 제182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

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2025. 1. 23. 2024헌나1]

###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4인의 재판관이 각각의견, 4인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으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방통위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의 추천·임명에 관하여 방통위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사 추천·임명 행위가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5인의 재적위원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이고,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으로 의결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

청구인이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항이고,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상 의무 중 하나이다. 피청구인은 방통위에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심의·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는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가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범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이 인용의견으로,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기각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은 기각의견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피청구인이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에 해당함은 인용의견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 일부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65조,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8조 제4호, 제49조,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 130조 제1항

방송문화진흥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5항, 제7조, 제8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823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제4항

【참조판례】

- 가.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29-633
-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판례집 19-2, 520, 531-532
-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판례집 29-1, 1, 15-21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판례집 33-2, 321, 345-347
-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판례집 35-2, 119, 129
-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판례집 36-1하, 283, 295, 303-304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대리인 1. 변호사 임운태
- 2. 변호사 최근
- 3. 변호사 박경현
- 4. 변호사 문수정
- 5. 변호사 장주영
- 6.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정경욱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최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의 임명 및 이 사건 심의·의결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7. 31. 피청구인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위원장(이하 ‘방통위

원장’이라 한다)으로, 김태규를 방통위 위원으로 각 임명하였다.

(2) 피청구인은 임명된 당일 방통위 제34차 전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다른 3인의 위원이 공석이어서 피청구인과 김태규 위원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피청구인과 김태규의 출석 및 찬성으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및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하고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하고, 이 사건 심의와 총칭하여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국회의원 김현 등 188인은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2) 국회는 2024. 8. 2.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로 가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추의결’이라 한다), 소추위원은 2024. 8.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

(가) 법률 위반

1) 임명 당일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회의 소집 및 이 사건 심의·의결

피청구인은 방통위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이하 ‘이 사건 방통위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질, 방송의 자유 및 독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의 성격, 방통위의 구성과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최소한 위원 정수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인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

서 이 사건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공개로 이 사건 심의·의결을 진행함으로써, 회의의 공개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4항 및 이 사건 방통위규칙 제9조 제1항, 외부인의 참여보장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6항 및 이 사건 방통위규칙 제10조 제1항, 언론보도권에 관한 이 사건 방통위규칙 제11조를 위반하였다.

2)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이사 강○○, 박○○, 윤○○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 조○○, 송○○은 피청구인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 7. 31.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함으로써 위원의 기피에 관한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

피청구인은 과거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에 재직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고 편향된 언론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방송의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의 회피에 관한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다.

4)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피청구인은 종전에 방통위 위원 5인이 서류심사와 면접 후 협의를 거쳐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 온 관례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임명 당일 이 사건 회의에서 피청구인과 김태규 위원이 토론 없이 여러 차례 반복 투표하는 방식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헌법 위반

1) 피청구인은 방통위법에 따른 정족수가 흠결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의결을 위법한 방식으로 강행하여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3) 방통위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입장만 반영할 경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민주적 운영원리에 따라 행사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로써 정치적 책임원칙을 위반하였다.

(2) 파면의 필요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형해화하였으며, 방통위를 합의회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반하여 방통위의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송의 자유 및 공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또한 국회 등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임명 당일 이 사건 심의·의결에 나간 점 등에 비추어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한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추의결 절차의 위법 여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의결 당시 청구인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최소한의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것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또한 탄핵소추 과정에서 피소추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 성격을 달리하므로(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을 예정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절차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소추의결이 피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로 인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인지 여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추의결이 피청구인의 임명직후 이루어진 점, 피청구인의 전임자들에 대하여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었고 피청구인에 대하여도 취임 이전부터 탄핵소추 가능성이 제기된 점, 일부 소추사유에서 피청구인의 취임 이전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추의결은 피청구인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해당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탄핵심판은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

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참조).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탄핵심판의 헌법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의 문화방송 재직 당시 행적 등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실관계는 피청구인의 자질 내지 취임 이전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방문진 임원 임명 안전에 대한 회피의무가 있다는 주장 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해당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질 내지 방통위원장 취임 이전의 행위를 탄핵사유로 주장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4.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의 및 탄핵의 요건

가. 헌법 제6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방통위법 제6조 제5항은 방통위원장이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방통위원장에 의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방통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방통위법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나.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등 참조). 그러나 ‘법률’에 법률 하위의 명령·규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등 참조).

라.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에 관한 부분, (2)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부분 (3)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부분 및 (4)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 관한 부분의 순서로 살펴본다.

5. 인정 사실 및 쟁점

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청구인은 2024. 7. 31.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당일 오후 5시에 비공개로 방통위 제34차 전체 회의(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였다.

(나) 당시 방통위에는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만이 위원으로 재직하였고, 나머지 3인의 위원은 모두 공석이었다.

(다) 이 사건 회의에서는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1)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조○○, 송○○(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과 강○○, 박○○, 윤○○(방문진 이사)가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신청한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로 의결함

2)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중 52명과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31명을 후보자로 정하기로 의결함

3)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권○○, 서○○, 이○○,

이□□, 이△△, 조□□, 황○○의 후임자로 권○○, 류○○, 서○○, 이▽▽, 이◇◇, 허○○, 황□□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권□□, 김○○, 김□□, 박○○, 지○○, 차○○의 후임자로 김△△, 손○○, 윤□□, 이◎◎, 임○○, 허□□을 임명하며, 방문진 감사로 성○○을 임명함

(2)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방통위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본인과 김태규 2인의 찬성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방송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결 당시 자의적으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을 왜곡하여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의결하였다’는 것으로 방통위법 위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해서는 방통위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한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방통위규칙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통위규칙은 방통위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서 헌법 또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의결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방청과 언론 보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로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이 부분 역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는바,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위 안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위원이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 즉 제척·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부분

(1)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던 방문진의 이사 강○○, 박○○, 윤○○와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 조○○, 송○○은 2024. 7. 31.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나) 강○○, 박○○, 윤○○의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사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과거 문화방송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로이카’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문화방송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으며, 문화방송 민영화를 시도한 장본인으로서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2인 체제’에서 밀실·졸속 의결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에 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송○○의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사유의 요지는 위 기피사유에 더하여, 조○○가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점(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5429 판결), 송○○ 역시 문화방송 재직 당시 피청구인과 이해충돌이 있었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청구인이 대전문화방송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내 불법 사찰 등으로 문화방송 본사의 감사 대상이었으나 조사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신청인들이 지원한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4. 7. 31. 이 사건 회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의결을 하였다.

(2)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위원의 기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 관한 부분

(1)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방문진의 이사 임기는

각 3년인바(방송법 제47조 제1항, 방문진법 제6조 제1항 본문 참조), 방통위는 매 3년마다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는 2024. 8. 31.,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2024. 8. 12. 각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전인 2024. 6. 28.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 모집공고를 내어 2024. 6. 28.부터 2024. 7. 11.까지 지원자를 공모하면서, 지원자들에게 ‘내부심사용 지원서,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 결격사유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절차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실시’라고 안내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2021년 진행된 이사 모집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다른 해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 공모에는 53명, 방문진 이사 공모에는 32명이 지원하였으나, 이후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1명 및 방문진 이사 지원자 1명이 지원을 철회하였다.

(다) 방통위는 위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들이 제출한 결격사유 확인서를 확인함과 더불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당선인 정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신 등을 통하여 방송법 및 방문진법상 결격사유 유무를 추가 검증하였다.

나아가 방통위는 지원자들이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결격사유 내지 방문진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방문진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9개 정당에 당적조회를 실시하고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0개의 정당에서 이 사건 회의 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2018년 진행된 이사 모집 절차에서는 당적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당적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하였다.

(라) 방통위 기획조정관 김▽▽은 피청구인의 방통위원장 임명 및 첫 출근 직후인 2024. 7. 31. 오전 10시경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의 지원서, 결격사유 확인결과, 총 454건이 접수된 국민의견수렴

자료(총 약 1600페이지 분량)를 지원자의 성별, 직업별, 전문영역별 등으로 분류하거나 가점·감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접수 순서대로 편철하여 피청구인 및 김태규의 비서실에 전달하였다.

(마) 2024. 7. 31. 오후 1시경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초안이 보고되었고, 오후 4시경 회의 일정이 공지되었으며, 오후 5시에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어 오후 6시 45분경 종료되었다. 이 사건 회의에서는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52명 및 방문진 이사 지원자 31명 전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였고, 면접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과 김태규가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2표를 모두 얻은 후보자를 추천·임명의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방송공사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하기로 결정되었고, 더 이상 2표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자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투표를 종료하고 나머지 한국방송공사 이사 4인 및 방문진 이사 3인에 대하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2)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방통위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되,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방송법 제46조 제3항),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문진법 제6조 제4항).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이루어진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이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6.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각각의견

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1) 범규범의 의미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범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나 범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범규범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

‘재적(在籍)’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

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통위의 의결이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참조). 또한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인이었으므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범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다.

(2) 방통위법 제4조가 방통위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체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신,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 하에 서로 다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여 방통위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정 위원수인 5인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인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의결의 전제조건으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권에서 추천한 1인, 야권에서 추천한 2인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 임명에 있어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방통위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의 3년 임기와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위원의 퇴임 시점, 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 및 그 시점, 위원 2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위원 지명·임명 여부 및 그 시점,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여·야 교체 여부 및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방통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이 모두 공석인 경우는 물론, 재적위원 3인이 대통령 지명 위원 2인과 여권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 종전 여권이자 현 야권 측에서 지명·추천한 위원 3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방통위의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방통위의 주요 소관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제12조에 의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최소한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국회에 의한 위원 3인의 추천 내지 국회가 추천한 위원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비롯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공석인 경우,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및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주요 소관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통위는 2023. 8. 25. 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위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 내지 대통령의 임명 불발로 인하여 10개월 이상을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회에 위원의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최○○ 후보자가 추천되었다가 임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후로는 추가적인 추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피청구인이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여 왔다. 그동안 이루어진 심의·의결 대상에는 공영방송 보컬

이사 임명에 관한 건,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건 등 적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과 같이 특히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도 존재하였다.

방통위법 제12조에서는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에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

법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56조), 만약 방통위가 위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입법자가 방통위에 최소 3인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를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것이다. 방통위법이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일부 위원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사정족수까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제3항),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방통위의 전신인 구 방송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8조 제1항). 그런데도 방통위법은 유독 방통위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거기에는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외부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비록 방통위법상 정원이 5인이라고 하더라도 재적위원이 2인인 상태에서의 심의·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고 이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심의·의결을 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의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 위반 여부

이 부분 소추사유가 이유 있으려면 그 전제로 피청구인에게 방통위원장으로서 방문진 임원 임명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은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과 더불어(제14조 제1항, 제2항)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피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14조 제3항 본문)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회피사유의 존부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의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위반 여부

(1) 방통위법은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동일한 안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통위법의 기피제도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되지 기피신청권 행사로 인하여 방통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방통위 심의·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방통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법은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에서 해당 위원은 당연히 제척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통위 위원에 대한 기피제도의 내용과 취지 및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제척·기피 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법률에서 기피신청의 대상자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상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방통위 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기피신청에 의하여 방통위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심의·의결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사정이 현저한 경우 그러한 기피신청은 그 자체로서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참조), 기피신청이 그 외의 사유로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위 조항에 의하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로 한정된다. 그런데 기피신청인 중 강○○, 박○○, 윤○○은 2024. 8. 12.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방문진 이사로서 신입 이사 공모에는 지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은 방문진의 이사 선임 관련 안전에 있어서 기피신청권을 가지는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조○○ 및 송○○의 기피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나, 해당 기피신청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방통위에는 해당 기피신청에 관한 건 및 기피사유와 관련된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이 남게 되므로, 결국 방통위 위원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이에 관한 일체의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위 신청인들은 기피신청서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기피신청에 관한 안전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는 이상 방문진 이사 선임의 건은 애당초 심의에 착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심의·의결이 적법한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방문진 이사로서 선임되고자 하는 자의 기피신청에 의하여 방통위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관련 절차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강○○, 박○○, 윤○○의 기피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기피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조○○, 송○○의 기피신청은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자인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방통위법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의·의결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의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문진법 제6조 제4항 위반 여부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각 한국방송공사·방문진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방송법 제48조 제1항, 방문진법 제8조 제1항) 임원의 추천·임명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며, 하위 법령 역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입법자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통위에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의 추천·임명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피청구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임명된 당일 같은 날 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안전을 심의·의결하면서 지원자들의 결격사유 존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방대한 분량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서류를 검토하고 결격사유의 확인 및 국민의견의 수렴을 거쳐 이 사건 회의에 제공된 자료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해당 자료가 전달된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된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지원자 52명 및 방문진 이사 지원자 31명의 후보자 중에서 피청구인과 김태규로부터 모두 득표를 한 후보자를 추천·임명 대상으로 선정하고 2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제외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의에서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사 모집공고의 내용과 방통위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의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함에 있어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

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1)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적(在籍)'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위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실제로 소속된 위원, 즉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 수의 위원 중 궐원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규범의 의미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므로(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참조),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독립체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헌재 1993. 5. 13. 91헌바17 참조), 이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방송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표현, 전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개개인의 의사와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에 기여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방송의 공적 기능에 관한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방통위법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과 함께 방송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질서를 형성하는 법률로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방통위법이 규율하는 방통위는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통합되면서 탄생하였다. 입법자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집중된 권한을 가진 행정부에 의하여 방송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이루어졌고, 민주화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 임원의 추천·임명을 포함하여 방송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방통위법 제3조 제1항)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위원이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제4조 제1항), 각 위원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제7조 제1항),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제8조). 5인의 상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 방통위 소관사무 중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공영방송 임원 추천·임명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허가·채허가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 소관사무는 위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제12조).

이처럼 방통위법은 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이를 방통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립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동시에,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방통위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여권과 야권 간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방통위의 존재 의의이자 목표인 방송의 자유, 공공성 등은 절대



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가치로서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하여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의 다원성과 실질적인 합의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방통위법은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5인의 위원들로 방통위를 구성함으로써,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제시, 공유 및 경쟁을 거쳐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중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 방통위가 다원적 배경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한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는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된(방송법 제43조 참조) 한국방송공사,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최다출자자인인 방문진의 관리·감독을 받는(방문진법 제5조 제2호 참조) 문화방송,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참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 방송 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다양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매개하고, 공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사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방송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 및 특정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참조),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은 공영방송의 임원에 대한 추천·임명권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가지는 방통위가 다원적 구성 및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할 때에 비로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방통위를 독립체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방통위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원 2인만이 재적하고 있는 경우에 방통위가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2인의 의결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청구인은 방통위 위원 3인이 임명되지 않아 공적인 상태에서 본인과 김태규 2인 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방통위의 전신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를 모두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방통위 회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방송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방통위의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5인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두었고, 상임위원의 직무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인 이상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5인 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의결정족수와 별도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방통위법이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으로 규정한 이상 통상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재적하여 심의·의결을 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5인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들어 입법자가 위원 2인만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 소집 절차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명

시하고, 단서 부분에서 위원장에게도 회의 소집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원장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을 합한 최소 3인의 위원의 재적을 전제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위원회 회의 소집에 있어서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필요함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도록 함으로써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및 위원 1인만 재적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단독으로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 즉, 재적위원 2인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위원회 소집 규정이 작동될 수 없고, 위원회 소집 여부가 위원장 1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제 기관과 같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입법자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적위원 2인만으로는 적법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처럼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 여부가 위원장 1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2인의 위원만이 존재함에 따라 의결 과정에서도 전원일치가 되지 않는 이상 다수결에 따른 의결이 불가능해지므로 위원회 의결 결과 역시 위원장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바,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재적위원이 2인만 존재하는 이른바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적법하다고 볼 경우 ‘행정부에 의한 방송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방지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되고, 위와 같은 제도적 보장도 무력화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에서 방송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방송 규제·감독기관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온 역사적 배경,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

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의결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다만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의 위원이 재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움은 앞서 보았는바,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문언만을 들어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 체제’ 하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방통위를 실질적으로 독립제 기관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4) 피청구인은 국회가 방통위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아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가 장기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통위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의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주장하는바, ‘2인 체제’ 의결의 적법 여부는 ‘2인 체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이고, ‘2인 체제의 책임 소재’ 또는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재적하고 있는 경우에 그 2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방통위 위원 중 2인의 위원만이 임명되어 재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독립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방





통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운영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해석은 방통위가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 협성이 있다.

(5)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위원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방통위원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내지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방통위원장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서(방통위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 참조) 그 권한 행사는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방통위법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제7조 제1항 및 제8조 참조).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및 제67조 참조)과 비교할 때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간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에 관한 헌법 제21조를 구체화한 법률로, 그 중 회의의 정족수에 관한 제13조

제2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다.

방통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방통위법 제6조 제1항). 방통위의 대표자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핵심적 직무인바, 방통위의 회의 및 의결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 사건 의결의 절차상 위법을 골자로 하고,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의결하였다는 점은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의 공통된 위법사유이다. 피청구인이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다수결의 원리가 반영되도록 한 방통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할 직무상 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4) 이 사건 의결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및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방송법 제46조, 제49조 제1항), 방통위가 임명하는 이사 9인으로 구성되는 방문진은 자신이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므로(방문진법 제6조, 제9조, 제10조), 각 기관의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운영 및 공적 기능 보장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통위원장이 피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취임 당일 성급하게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였다.

(5)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한 전임자들에 대하여 연이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위 전임자들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피청구인의 전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이들의 방통위원장 재임 시기에 ‘2인 체제’ 하에서 행해진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었고, 피청구인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피청구인이 동일한 방식의 의결을 강행할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이 있음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의 임명 당시에도 ‘2인 체제’하의 의결에 대하여 언론에서 수차례 비판을 제기하였고,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된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다수의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며, 관련 집행정지결정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음이 지적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임명 당시 이미 방통위의 구성 및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방통위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으로서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함으로써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였어야 하는바, 먼저 국회에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촉구하는 등 ‘2인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방통위의 온전한 구성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임명 당일인 2024. 7. 31. 곧바로 이 사건 회의를 소집하여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가 이 사건 소추의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의결로써 이루어진 방통위의 처분 등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이 제기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대상인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결일인 2024. 7. 31. 기준으로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이들은 모두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방송법 제47조 제3항, 방문진법 제6조 제2항), 피청구인이 임명 당일 재적위원 2인만으로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행정부·사법부가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을 비롯하여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하는지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법률의 준수는 곧 헌법질서에 대한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피청구인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더 나아가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7)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의 본질적 전제가 되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

8. 결론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4인이 인용의견으로 탄핵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및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9.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나는 이 사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설령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간의 법익형량 결과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를 대표하고 그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행정공백과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이 의결정족수로 규정된 ‘재적위원 과반수’에 대한 문언해석으로부터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의 위법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임명되기 전에도 방통위는 이른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해임,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고, 이렇게 의결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의 결론이 서로 엇갈림에 따라 이 사건 의결 당시에 피청구인이 참조할 수 있는 확립된 판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재적위원 2인에 의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의결을 하였을 당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회의 위원 추천 내지 대통령의 위원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방통위의 재적위원 수는 2023. 8. 25. 이후 줄곧 2인 이하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방송통신업계 및 국민 일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의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심의·의결 전 방통위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하여 재적위원이 2인인 상태에서의 심의·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탄핵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 내지 조직 내부의 징계권 행사로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제어할 것이 기대되기 어려울 때에 통상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법치주

의의 특별한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이 예정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참조).

이 사건 소추의결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건 심의·의결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었다. 또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및 방통위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에 의한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각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다. 이처럼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의 감시와 견제 및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작동하고 있고, 이로써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여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 역시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10.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우리는 앞서 인용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는 그 자체로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아가 피청구인이 조○○, 송○○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행위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상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방통위 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강○○, 박○○, 윤○○의 기피신청은 위 조항에 따라 기피신청

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나, 조○○ 및 송○○은 위 조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 조○○ 및 송○○의 기피신청이 적법하다고 볼 경우 방통위에는 해당 기피신청에 관한 건 및 기피사유와 관련된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각의견과 같다.

나. 그러나 인용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방통위가 합의회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 기피신청 당시 방통위에는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만 재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과 관계없이 이미 방통위는 적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조○○, 송○○의 기피신청은 이로 인해 방통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방통위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기각의견과 같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다고 보고, 위 신청인들의 기피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을 방통위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할 경우 비로소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더라도, 방통위 위원 1인에 대한 기피신청만으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방통위 위원 3인에 대한 추천·임명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외부적인 사유에 대하여 위 신청인들에게 책임을 돌려 기피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 송○○은 피청구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에 응하여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한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 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송○○은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방송 방송기자로 재직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2012년경 피청구인이 문화방송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정보가 경영진에 의하여 무단으로 수집·열람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확정된 이상(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5429 판결 참조), 피청구인에 대한 이들의 기피신청

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조○○, 송○○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2025. 1. 23. 2019헌바317]

#### 【판시사항】

가.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권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1)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선동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2) 가입선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형사사건인 당해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입권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1) 가입선동조항에서 말하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 ‘선동의 주체 및 객체’, 그리고 ‘선동행위’ 등의 의미는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해석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테



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경우 테러단체의 확장·증대를 방지함으로써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의 구성·가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의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가입선동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가입선동조항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행위만을 규율하므로, 가입선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2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20. 6. 9. 법률 제1746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5항

【참조판례】

- 가. 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공보 278, 1258, 1262
- 나. (1)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6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 (2)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판례집 27-1, 453, 472-473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당 사 자】

- 청 구 인 수○○(외국인)
-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 담당변호사 천낙봉
- 법무법인 다산

- 담당변호사
- 조지훈
- 법무법인 두울
- 담당변호사 김하나
- 변호사 서채완, 이일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위한테러 방지법위반

【주 문】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2007. 7. 8.경 국내 입국한 후 2014. 7. 22.경 난민인정은 불허되었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① 2015. 10. 25.경부터 2018. 6. 18.경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② 함께 일을 하던 알○○(외국인)에게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 및 청구인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18. 12. 6.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68).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9. 7. 12.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과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 전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노4357). 이에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24. 9. 27.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도11015).

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2. 위 신청이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9초기1678), 2019. 8. 12. 위 조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권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이하 ‘가입선동조항’이라 하고, 가입권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 3. 3. 법률 제1407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각 목 생략)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

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20. 6. 9. 법률 제1746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광범위한 행위태양을 대상으로 하고, 권유 또는 선동의 수단을 한정하지 않으며, 권유 또는 선동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데, 이러한 불명확성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보완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테러단체의 이념이나 사상을 긍정하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와 표현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테러의 실행·예비·음모 혹은 테러단체 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다른 조항들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테러단체 가입 강요만을 처벌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명백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을 테러행위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 가입 지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가입권유조항에 대한 판단**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중국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입권유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가입선동조항에 대한 판단**

**가. 개관**

테러방지법은 2016. 3. 3.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테러방지법상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

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호),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며(제2조 제2호),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테러방지법 제17조는 ‘테러단체 구성죄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 차등 처벌하고 있고, 제2항에서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심판대상조항 포함)에서는 ‘테러단체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과 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제17조 제6항).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가) 가입선동조항은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자발적인 결단에 따라 형성한 의사를 위 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가입선동조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행동이 표현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가입선동조항으로 인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것이고, 가입선동조항은 개인의 결단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 그 자체를 직접 제한하지는 아니하므로, 가입선동조항의 위헌성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나) 가입선동조항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곧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므로, 가입선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한다. 또한 가입선동조항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테러행위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 가입 지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입선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와 중복되므로, 위 주장 역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함께 판단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가입선동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가입선동조항은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조항이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정도는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이다.

그러나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나) 가입선동조항은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므로(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테러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는 단체의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가입선동조항이 금지하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는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며 피해결과도 매우 중대하므로 그 예방과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고려에서, 테러의 예비·음모 성격을 갖는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을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긴급 삭제 요청 등 행정적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제12조 참조),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와 구별되는 행위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면서,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어떠한 표현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의 경위와 배경 및 상황,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표현방법 및 표현이 전달되는 수단과 방법, 기간을 함





게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된 표현의 경우 위 판단기준에 더하여 관련 게시물의 수, 게시기간, 불특정한 대상에 대한 노출 정도나 빈도와 아울러 ‘특정한 테러단체’의 인식 가능성 및 그 테러단체의 인지도, 테러단체 구성원들의 인적관계와 행동 양태, 구성원들이 테러를 수행하는 방식과 발전과정, 구성원들의 모집방식, 그리고 선동자의 경력과 지위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입 선동에 대한 객관적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참조).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명확성을 더욱 담보할 수 있는 입법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입법형식이 테러행위의 예방과 사전 대응이라는 입법목적은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수단에 제한이 없고, 테러단체는 국제적으로 은밀하게 그 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선동하는 행위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질 때 가벌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입선동조항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입선동조항은 선동의 수단이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에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선동의 수단에 포함될 수 있고, 강력한 파급력·영향력과 동시에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역시 선동의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참조).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이 수단이나 방법의 측면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가입선동조항이 선동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선동의 주체에 관하여 보면, 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입

선동조항이 포함된 같은 조 제3항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즉 제17조 제3항은 제1항과 달리 테러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의 외부에서 테러단체의 인적 확장·증대에 기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의 주체는 테러단체 구성 혹은 가입과는 별개로 테러단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그 외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선동’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선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단체 구성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제19조), 가입선동조항은 불특정 다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선동의 객체에 포함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선동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입선동조항의 목적은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제1조 참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경우 테러단체의 확장·증대를 방지함으로써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화

1) 테러방지법은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를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제6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 구성·가입을 처벌함으로써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동일한 정도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테러단체 가입 선동까지 처벌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테러행위의 이전 단계에서 이루

어지는 테러단체의 확장·증대와 관련된 행위에 대처하기 어렵고, 테러단체 구성·가입만을 처벌하게 되면 테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채 테러단체 외부에서 테러단체의 확장·증대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방식과 그 위협의 정도, 테러단체가 신규 인원을 충원하는 다양한 형태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 및 테러단체 구성·가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선동조항의 입법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 ‘가입’의 행위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가입과 연관된 행위로서 지원 혹은 권유와 별도로 ‘선동’을 규정하고 있다.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를 인적으로 확장·증대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테러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행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테러단체의 ‘가입’ 행위를 한정하거나 가입과 연관된 행위를 지원 혹은 권유로 한정하는 것 역시 입법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2)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의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나아가 테러단체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가입선동조항은 테러단체나 테러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자신의 신념 내지 생각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것에 한정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참조),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범위는 더욱 한정되어 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에게 가입의 결의가 발생하거나 피선동자가 가입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가입 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가입선동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징역형의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 등과 같은 국내법에서 죄로 규정한 테러행위의 실행·예비·음모(형법 제250조, 제255조, 제258조, 제276조 등 참조) 또는 테러단체 구성·가입(테러방지법 제17조 제1항)과 비교해 볼 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대한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테러단체 가입 지원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데(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이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과 가입 지원이 테러단체를 인적으로 확장·증대하는 데 있어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입선동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가입선동조항은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바, 가입선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가입선동조항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행위만을 규율하므로, 가입선동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입선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라) 소결

가입선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 중 가입권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가입선동조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5. 1. 23. 2020헌바510]

#### 【판시사항】

가.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이하 ‘사업시행자조항’이라 한다)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이하 ‘비공원시설조항’이라 한다)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추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들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전 단계에서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수용의 문제 등은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으로 인하여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사업시행자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비공원시설조항은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대규모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비공원시설조항은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공원시설이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그 규모를 도시공원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영리추구에 치우쳐 공공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비공원시설조항으로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비공원시설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도시공원의 확보,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제21조의2 제1항

####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헌법 제37조 제2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6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호, 제13호, 제26조, 제48조 제1항, 제86조 제7항, 제88조 제1항·제3항, 제98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2항, 제9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당사자】**

- 청 구 인 1. 송○○
- 2. 나○○
- 3. 정○○
- 4.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831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주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및 제21조의2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건설부장관은 1975. 2. 18. 광주 (주소생략) 일원에 ○○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주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 제24호), 위 공원은 1986. 5. 29. 광주 남구 (주소생략) 일원에 설치하는 □□공원과 합병되었다(전라남도 고시 제62호). 이후 광주광역시장은 1992. 3. 3. 공원전체면적 3,011,952㎡의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였다(광주광역시 고시 제1992-16호).

나.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20. 1. 16. ○○공원개발 주식회사(이하 ‘○○공원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원개발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2020. 1. 22. 공원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산정된 금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2. 3. 이 사건 공원 중

2,435,027㎡에 공원시설 2,245,666㎡, 비공원시설 189,361㎡를 설치하는 사업인 ‘□□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 광주광역시장과 ○○공원개발을 지정·고시하였다(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7호, 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라. 광주광역시장은 2020. 2.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하였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289호), 2020. 6. 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92호,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 송○○은 이 사건 공원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지정처분 및 이 사건 인가처분에 관하여 2020. 4. 21.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원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로 위 사건에 보조참가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2. 9. 29.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1831).

바. 청구인들은 위 제1심 계속 중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2. 각하 및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20아5247), 2020.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 제21조의2 제1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 중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6항, 제7항, 제9항과 제12항에 대하여는 그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 주장의 취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광역시장 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한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2항에 대한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강제수용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원녹지법 제21조 제4항 및 제21조의2 제1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중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부분 및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로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이하 ‘사업시행자조항’이라 한다) 및 제21조의2 제1항(이하 ‘비공원시설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 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사업시행자조항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사인(私人)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이하 ‘소유 요건’이라 한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이하 ‘동의 요건’이라 한다).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의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조항은 공원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기만 하면 공원부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조항은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사업시행자조항으로 인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은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 비해 수용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비공원시설조항에 관하여

비공원시설조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만만 아니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시공원 설치 용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축 용도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조항은 공공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설령 공공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비공원시설조항으로 인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은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 비해 수용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에서는 국토계획법상의 동의 요건 및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간공원추진자도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업시행자조항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비공원시설조항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은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 비해 수용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이 더 크므로 위 조항들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예정된 대로 진행되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과 달리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사업시행자조항에 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공원녹지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원녹지법 제1조). 이 중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 시설로서(공원녹지법 제2조 제3호),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인 동시에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제13호).

(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였고, 2011. 12. 말 기준 도시공원의 조성면적은 결정면적 1,008km<sup>2</sup>의 38.2%인 385km<sup>2</sup>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구 공원녹지법(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1조 제4항을 신설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사업비(토지매입비를 포함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금 예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 12. 기준 도시공원의 조성면적은 결정면적 1,020km<sup>2</sup>의 40.4%인 412km<sup>2</sup>에 불과하였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2000. 7. 1.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2000. 7. 1.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인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2020. 7. 1. 그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있었다.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효력을 잃게 될 경우,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부지에 대규모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사업시행자조항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금예치 요건을 '해당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에서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다) 이처럼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시행자조항을 통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경우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시행자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의 요건과 소유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조항은 소유 요건이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다.

(나) 한편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시계획인가 단계까지 의견 제출을 통해 사업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과 마찬가지로 광역시장 등과 같은 공적 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즉,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6조, 제28조).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공원녹지법 제18조 제1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광역시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 제1항, 제3항). 광역시장 등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광역시장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광역시장 등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90조 제1항, 제2항).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광역시장 등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 제3항).

이처럼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실시계획의 인가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전 단계에서 광역시장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에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준용되므로(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 민간공원추진자에게도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토지보상법 제16조, 제26조), 민간공원추진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수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민간공원추진자는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40조).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인가,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처분을 행정소송 등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수용의 문제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사업시행자조항으로 추구되는 도시공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의 공익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조항으로 인하여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절차 및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제한의 정도가 사업시행자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4) 소결론

사업시행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비공원시설조항에 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원녹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공원 조성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에 2009. 12. 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된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그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제21조의2를 신설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된 공원녹지법은 제21조 제4항을 신설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동의 요건 및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현금을 예치하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14. 12.경까지도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하여 도시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없었고,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 한꺼번에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자,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된 비공원시설조항은 비공원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인지,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30퍼센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즉, 비공원시설조항은 민간 자본의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대규모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공원시설조항을 통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비공원시설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공원추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법에 대한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2014. 12.경까지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하여 도시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2015. 1. 20. 법률 제13051호로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어 2022. 3. 기준 4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완료되었고, 72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연혁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공원시설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상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공원시설조항은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장기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 한꺼번에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서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 내지 제정취





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공원시설조항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을 것,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것,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도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비공원시설이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원시설조항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그 규모를 도시공원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도시공원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원시설조항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영리추구에 치우쳐 공공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공원시설조항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앞서 사업시행자조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전 단계에서 광역시장 등의 공적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반영을 포함한 공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련의 절차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도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공원시설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비공원시설조항으로 추구되는 도시공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의 공익은 작지 않다. 비록 비공원시설조항으로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절차 및 보상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비공원시설조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4) 소결론

비공원시설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5.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2025. 1. 23. 2021헌바100]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경우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내심의 목적은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판례집 21-2하, 83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판례집 24-2상, 125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판례집 30-1상, 68  
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판례집 30-2, 314

**【당 사 자】**

청 구 인 남○○  
대리인 변호사 변선중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8125  
배당이의

**【주 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 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경3849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매각부 동산 중 일부의 소유자이다.

나.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경매에서 85,222,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2020. 1. 15.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최고가매수신고 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0. 2. 4.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 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11.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보증금 85,222,200원을 공탁하였다. 항 고심 법원은, 이 사건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항고심 계속 중인 2020. 2. 13. 여주시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여 2020. 3. 24. 항고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항고인)은 더 이상 농지취득자 격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 정을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8. 4. 항고를 기각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라70), 위 결정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경매에서 2020. 9. 23.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2020. 9. 28.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집 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이의가 취하 간주되 었다는 이유로 위 배당이의의 소가 2021. 4. 20. 각하 되었다(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원인 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1나69516).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21. 3. 25. 매 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소유자 등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 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9.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카기10116). 이에 청구인은 2021.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전체를 심판대 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유자이므로 이에 관 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6항 중 ‘소유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 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관련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 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 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 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때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 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무용한 항고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 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 지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소유자인 항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 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되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제3항, 이하 민사집행법은 법률명을 생략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겨 집행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 등의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매절차의 특정한 위법을 지적하는 항고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매각절차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항고권자의 고의적인 집행지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하다.

항고의 기각 또는 인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탁된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항고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항고가 기각된 때 항고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입법부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소송과 집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의 구성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등의 보증공탁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헌재 2018. 1. 25. 2016헌바220; 헌재 2018. 8. 30. 2017헌바87 참조). 이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 미만으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과 위와 같은 정도의 보증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항고보증금의 액수 그 자체가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인은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항고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면, 항고가 기각된 경우 소유자인 항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한편,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2)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제130조 제7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이와 같은 반환 범위의 차이는, ‘채무자 및 소유자인 항고인’은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거나 채권회수를 지연시켜 채권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통상 무익한 항고로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그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항고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지만(제147조 제1항 제3호),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항고심에 이르기 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법보좌관은 자신의 매각허가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고, 그렇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도의 고안으로 자신이 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 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마)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한 것 자체가 원시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 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항고가 기각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항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유자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심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항고이유를 판단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 사이에 생긴 사유를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매각허가결정 당시에는 항고이유가 있었다고 항고심 결정 시까지 상대방은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항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감추어진 목적을 가지고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내심에 감추어진 목적은 형식상 내세우는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 기각 사유를 따져 항고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권리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항고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항고기각될 경우 항고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임에 비해, 무익한 항고권의 남용으로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훨씬 중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6.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5. 1. 23. 2021헌바268]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제49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호에 규정된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등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포함되므로,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에 대해 분리 선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이와 같이 분리 선고를 하는 것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성격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형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법원은 분리 선고로 지역농협 임원의 자격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분리하여 선고받는 피고인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죄와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의2 제1항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8호·제2항

【참조판례】

헌재 2013. 7. 25. 2012헌바112, 판례집 25-2상, 189, 195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판례집 33-2, 87, 11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당사자】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외 2인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70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변조교사

【주 문】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
정된 것) 제4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
은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67명의 조합원에게 황태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19. 1.말경 조합원 강○○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
3771), 농협 직원에 대한 증거변조교사 혐의 및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같은 법원 2019고단
5457),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
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
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20. 3. 6.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771, 2019고단
5457(병합)].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
속 중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
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8.
12. 청구인에게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
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20노704), 위 신청은 기
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초기369). 청구인은 2021.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
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1. 12.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1555).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을 불문하고
‘농협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
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
정된 것)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
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
된 것)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
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
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
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
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일정한 선거범죄와 경합범인 다른 죄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선거범죄에 대하여 벌
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죄가 농협 임원의
자격이나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구별 없이 위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
여 징역형의 병과가 가능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더 가
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여기에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
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영업조합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청소년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일정한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분리 선고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위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반드시 분리 선고를 하도록 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한다(형법 제37조 전단). 형법은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제38조 제1항 제1호),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제38조 제1항 제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 위 처벌례와 다르게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4986 판결;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법 제38조에 규정된 경합범 처벌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협법 제49조 제1항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그 중 제8호는 ‘(농협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이하 이들 죄를 합하여 ‘선거범죄’라 한다)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법관은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의 예외로서

이들을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나.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분리 선고를 하여 각각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받는 피고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분리하여 선고받는 피고인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죄와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을 비교집단으로 삼아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 내지 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법률들은 목적, 규율대상, 조직이나 업무 등에 있어 농협법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법관의 양형재량권 침해 주장 역시 위와 같은 평등원칙 위반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 이를 단일한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수개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인바(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584 판결 등 참조),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때 농협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분리 선고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선거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과 그 신고를 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이 모두 포함되므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신고를 할 때에도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에 대해 분리 신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후보자비방을 통한 흑색선전과 과열·혼탁선거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며,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크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112 참조). 이러한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성격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범죄로 인한 신고형을 밝힘으로써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4)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신고를 하는 것이 양형의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통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어디까지나 각 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범위, 즉 피고인의 책임범위 내에서 형을 양정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합범가중은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므로 분리 신고를 할 때의 본형의 합계가 경합범가중을 하여 신고한 하나의 형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분리 신고를 하면서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짧아지거나 더 단기간으로 선고유예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집행유예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 신고를 하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보다 각 죄에 대한 형이 낮아짐으로써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분리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분리 신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에 비해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원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 지역농협 임원의 자격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황 및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양형재량을

행사하여 신고형을 정하게 될 것이다.

(5)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분리하여 신고받는 피고인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죄와 단일한 징역형을 신고받는 피고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7.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2025. 1. 23. 2022헌바61]

【판시사항】

일정한 범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리사법 및 변호사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변호사는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리사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범무법인이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범무법인에 대하여 특허법인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제2항

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 제1조

【참조판례】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1, 946, 963  
헌재 2008. 11. 27. 2007헌바51, 판례집 20-2하, 273, 284  
헌재 2010. 2. 25. 2007헌마956, 판례집 22-1상, 329, 343

【당사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두68837 상표등록출원 무효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 문】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은 2016. 2. 24. '법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이라는 상표의 등록출원업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인 이○○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2016. 3. 10. 위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하였다.

특허청장은 2016. 3. 23.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주○○에게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이 이 사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특허청장은 2016. 5. 25.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주○○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4. 27. '이 사건 보정명령이 위법하므로,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70000). 이에 특허청장이 항소하였으나 2017. 10. 1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상고하였으나 2022. 2. 10.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2017. 9. 13. 주○○이 출원한 상표명과 동일한 '○○'이라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람으로서, 당해사건 계속 중 특허청장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0. 기각되자(대법원 2017아623), 2022.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은 이 사건 법무법인이 2016. 3. 10.에 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중 '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특허청장과 대한변리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한 명만 있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중자격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인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과 배치된다. 특허법인은 2000년에 도입되었고 법무법인은 1982년에 도입되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특허법인보다 먼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법무법인은 특허법인에 비하여 변리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특허청장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게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특허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변리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정도나 특허청장 등의 관리·감독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 및 변리사로 하여금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본문, 변리사법 제6조의2 제1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조항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소에 재석(在席)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변호사 혹은 변리사가 여러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동일한 장소에서의 이중자격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변리사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참조), 이 부분 주장에 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7헌바5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에 관한 조항으로서 법무법인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에 필요한 요건 등은 관련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2) 변리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심판대상조항 시행 당시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고[구 변리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6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이하 ‘구 변리사법 조항’이라 한다], 변리사법은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이에 업무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

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므로(변리사법 제2조) 직무영역이 다소 한정적인 반면,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하므로(변호사법 제3조) 그 직무영역이 법률사무 전반으로 포괄적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마 956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변리사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에 대하여 특허법인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3) 청구인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에 관여하게 되고, 법무법인은 특허청장과 대한변리사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에게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50조 제2항),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이에 관여할 수 없다(당해사건 판결 참조).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변호사법 제57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이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변리사 아닌 자가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그 규율을 담보할 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변리사 업무에는 변리사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용되므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변리사법 혹은 변리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허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변리사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만약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특허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변리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혹은 등록취소(같은

항 제4호)의 징계를 받아 법무법인에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게 되면 그 법무법인은 더 이상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제90조 제3호) 혹은 업무정지명령(제102조)을 받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변리사법 제17조의2)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의 규율을 중첩적으로 적용받게 되므로,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감독의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변리사법상 특허법인 제도는 2000. 7. 1. 도입되어 변리사 업무의 전문가인 변리사들도 이때부터 비로소 법인 형태의 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3인 이상의 변리사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의 이름으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1982. 12. 31. 도입된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변리사법 조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만으로도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었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내지 소속 변호사들은 모두 변리사 등록만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으므로, 법무법인이 특허법인에 비하여 변리사 업무 수행에 관한 전문성·조직성이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더 적은 수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으로도 특허법인보다 먼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하여, 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2021헌마653]

#### 【판시사항】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불허하여 투기를 억제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장한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법인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금 제도나 자금동원능력 등이 자연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부담 증가 내지 경영 악화로 인한 양도를 자연인의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이주하기 위한 양도’와 같은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은 그 자체로는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사택에 장기간 거주한 직원이 있다 하여 해당 법인을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자연인’과 같다고 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도인으로서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지 못하고 양수인으로서 재건축사업조합에 부동산을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에 매도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주거의 안정을 달성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고,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제35조 제3항, 제12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고,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헌재 2008. 9. 25. 2004헌마155등, 판례집 20-2상, 528, 549

#### 【당 사 자】

-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 2.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라고 한다)는 인쇄 및 제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유□□은 청구인 ○○의 사내이사이다.

청구인 ○○는 1988. 5. 12.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원용 주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 유□□은 1979. 2. 1. 청구인 ○○에 입사한 뒤 1991. 12.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아파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으면서 2017. 12. 2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약칭할 경우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 유□□은 2020. 10. 30. 청구인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청구인 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연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후부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이하 ‘토지등’이라고 한다)를 양수한 자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고 한다)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게 된 이유가 세대원의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을 원인으로 한 해당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등 다른 지역으로의 세대원 전원 이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1. 6. 4. 위 도시정비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이 자연인인 조합원의 토지등 양도에 관하여는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는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법인인 조합원의 토지등 양도에 대하여는 그러한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고,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

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고,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조합원) ② 법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구매되는 경우
- 6.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시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자연인인 조합원이 토지등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일정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면서 법인인 조합원의 토지등 양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의 승계 금지 및 예외

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의 소유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인가 후 토지등의 양도·증여·관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가 문제되자,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그와 같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된 후라면 재건축사업단지 내의 토지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만

제39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서는 양도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사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서, 이들에 해당할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5.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심사기준

조합원의 자격 내지 지위는 재건축 후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청구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토지등의 소유권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조합원 지위’의 처분을 제한하는 법률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8. 9. 25. 2004헌마155등 참조).

한편,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8. 9. 25. 2004헌마155등 참조).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인 조합원의 토지등 양도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토지등 양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불허하면 재건축사업 이후의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토지등을 양수하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신규 공급되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 및 주변지역 아파트의 가격 동반 상승이 억

제되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아무런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토지등을 보유한 실거주자에게는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예외 사유들 중에는 법인인 조합원에게도 해당되는 사유들이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내지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착공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준공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와 같이, 일정 기간 이상 토지등을 소유하여 온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인 조합원의 경우에도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 영등포구는 2023. 1. 5.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되었는바(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참조), 토지등이 소재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후에는 양도인이 법인인든 자연인인든 그로부터 토지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인 조합원에게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예외를 일정 정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제도(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개정) 등이 강화되고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법인이 소유한 사원용 주택을 임직원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법인이 사택을 보유하는 경우 사택의 유지비용에 대한 손급산입(경비 처리)을 통한 법인세의 절감 가능성, 자연인에 비해 우월한 법인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하면, 자연인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해외이주’와 같은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연인(개인)인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담 증가나 가계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양도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인의 세금부담 증가 및 경영 악화와 같은 사정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1세대 1주택자인 자연인의 장기간 보유 및 거주와 같은 사정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장기간 사택을 보유하며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한 직원에게 양도한 사정은 그와 달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은 그 자체로는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을 뿐더러, 사택이라 할지라도 법인은 동시에 복수의 사택을 보유할 수 있고 그 곳에서 복수의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직원의 사택 거주를 곧바로 법인의 실거주로 의제하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보유한 법인 사택을 사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개별적 사정까지 전부 예외사유로 일일이 반영하기란 입법기술상 어렵다. 이를 더욱 일반화하여 ‘장기간 보유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사유를 두어 예외를 더욱 확대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민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지금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기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4)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 중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예외를 최소한으로 인정함으로써 달성하려는 투기 억제라는 공익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대하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등의 소유자가 받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은 조합원 지위를 전매하지 못하여 해당 부동산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부동산만큼의 가격으로 양도하지 못하거나, 이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조합에게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양도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거나 법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3)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평등권 침해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법인인 조합원을 자연인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법인의 재산권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침해 주장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음에 따라,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분양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장래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양수인이 주택재건축사업 종료 후 새로 건축된 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는 점이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합에 의한 수용재결 내지 매도 청구소송과 관련된 문제일 뿐 심판대상조항과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 토지등을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입는다 해도 이는 조합원의 지위 승계 불허라는 재산권의 제한에 수반되는 반사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는 침해될 여지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2025. 1. 23. 2021헌마806]

【판시사항】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감액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에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내용,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파면에 따른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게 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심

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그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도입 전에 합산된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계속해서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종전 재직기간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되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의 취지를 달성하며, 공무원연금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징계에 의한 파면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제도가 무관한 점,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등이라 하더라도 종전 재직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손상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과 재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제28조 제1호 가목, 제65조 제1항

**제2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제2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 제1조

**【참조판례】**

- 가. 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판례집 22-2하, 150, 170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판례집 28-1하, 87, 96  
헌재 2024. 3. 28. 2020헌마1401등, 판례집 36-1상, 348, 355
- 나.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등, 판례집 26-2상, 325, 330  
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판례집 28-1상, 414, 420
- 다. 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판례집 28-1상, 414, 423  
헌재 2016. 6. 30. 2014헌바365, 판례집 28-1하, 516, 527  
헌재 2019. 2. 28. 2017헌마403등, 판례집 31-1, 188, 194  
라. 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판례집 28-1상, 414, 422-423

**【당 사 자】**

청 구 인 광○○  
대리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홍영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7. 7. 19.부터 2010. 4. 30.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할 때까지 약 23년 10월 동안 ○○ 소속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청구인은 2013. 1.부터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2호,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연금을 매월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 7. 1. ○○구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4년 동안 재직하다가 2019. 6. 30. 정년퇴직했다.

다. 청구인은 2019. 7. 15.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정년퇴직 후 총 재직기간 27년 10월에 대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한 산정 안내문을 받았는데, 종전의 파면에 따른 퇴직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라.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이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위 조항은 형벌이나 징계 등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 4. 16. 청구인에게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청구인의 퇴직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퇴직연금이 재산정되었다는 것과 이미 지급한 2021년 3월분의 퇴직연금 중 1,433,93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이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후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받던 중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사람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⑧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감액받은 사람이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

직급여는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을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 다. 퇴직수당: 2분의 1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고,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1)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종전에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 합산을 통해 새롭게 산정된 퇴직연금수급권을 부여하여 종전의 퇴직연금 감액이 소멸되도록 운영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의 효과를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모법에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 심판대상조항 중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 부분은 문언상 청구인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있었고 재임용된 후 퇴직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아직 퇴직연금을 받기 전의 사람 중 어디까지가 적용대상인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3) 청구인과 같이 재임용 후 퇴직하여 새롭게 산정된 퇴직연금수급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위 퇴직연금수급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4)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재직기간 합산을 통해 종전의 퇴직연금 감액이 소멸되도록 운영되었고 재직기간 합산의 효과를 제한하는 입법이 전혀 없었으며, 공무원연금공단도 그와 동일하게 해석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석을 신뢰하여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고, 퇴직 후에는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해 왔다.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5) 심판대상조항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있었고 재임용된 후 퇴직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아직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사이에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감액지급의 대상을 차등화하지 않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



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재임용된 후 퇴직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감액지급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나. 평등권 침해

심판대상조항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있었고 재임용된 후 퇴직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아직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사이에 퇴직연금수급권의 효력과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의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공무원과 일반 국민·근로자에 비하여 청구인과 같이 퇴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쟁점

(1)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7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연금수급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시행 전에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수급권을 새롭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퇴직연금 감액 및 재직기간 합산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다. 퇴직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경우 국가는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및 공무원연금의 형성절차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 2. 28. 2017헌마403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경우인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한다.

이미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이 충족되어 성립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급부의무자의 일회성 이행행위에 의하여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헌재 2016. 6. 30. 2014헌바36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임용 및 재직기간 합산을 마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연금 감액 사유가 있었고 재임용 후 퇴직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아직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퇴직연금의 감액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을 퇴직연금의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공무원과 일반 국민·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자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청구인과 같이 재임용 후 퇴직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징계에 의한 파면으로 퇴직연금의 감액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과 퇴직연금의 감액

이 없는 일반적인 퇴직공무원 사이에는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가입자, 제도의 목적과 기능, 성격, 보호대상과 급여의 종류, 비용부담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차별취급을 논할 만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11. 30. 2016헌마101등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거나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참조).

(2)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그 감액지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살펴본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권법령조항 자체가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하위법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참조). 또한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24. 3. 28. 2020헌마1401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었다는 사유로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 감액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조항은 없으나 앞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의 감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파면을 둔 이래로 현재까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60. 1. 1.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의 합산에 대해 규정하면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을 합산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감액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한 바는 없다.

비록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었다는 사유로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한 경우 그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감액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상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등; 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문언상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라 감액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은 제1조에서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심판대상조항의 신설과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는 “급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급여 제한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 제한 효과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따른 급여 제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하더라도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에 의한 파면에 따른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은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임용 전 징계에 의한 파면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았던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된다.

(5) 위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의 내

용,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지급사유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그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과 효과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1)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365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어 퇴직연금을 감액지급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재임용 후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과 같이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실무상 퇴직연금수급자에게 유리하게 합산된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감액되지 않은 온전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둬으로써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헌재 2019.

2. 28. 2017헌마403등 참조). 한편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재직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로 하여금 전체 재직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참조), 나아가 이미 종전 재직기간만으로도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 취지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 대한 퇴직연금 감액제도와는 무관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의 내용은 변경된 적이 없고,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 및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관련 규정의 가능한 해석을 명시·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도입 전에 합산된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고 계속해서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거나 이러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은 그 시행 이후에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급되는 퇴직연금 중 종전 재직기간 부분에 대해서만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을 환수받지 않고,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연금을 감액받던 사람에 대해 재임용과 재직기간 합산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여 이들에 대한 제재의 취지를 달성하며, 나아가 공무원연금제정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

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지만, 이 재원을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후불임금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귀속시킬 수는 없고, 입법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5헌바18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재직 중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을 하더라도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에 의한 파면에 따른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의한 파면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관계를 배제하는 처분으로, ① 위 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2분의 1을, 퇴직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앞에서 본 것처럼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고,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금액 산정 시 고려되는 재직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취지는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였다거나,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된 기관에서도 퇴직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



라도 해당 공무원의 종전 재직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손상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앞에서 본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과 재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후문은 급여제한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5. 1. 23. 2021헌마853·1294(병합)]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

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을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도, 아동이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1차적으로는 그 아동의 전 생애에, 2차적으로는 그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이 이 사건 범죄의 개별 행위별로 또는 금지행위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 까지 달리하여 형사책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였고, 또한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조항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라목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참조판례】

- 가.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6
-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판례집 29-2하, 103, 114
-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판례집 31-2상, 543, 551
- 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판례집 32-1하, 486, 490-491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606
-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 나.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판례집 31-2상, 543, 555-556
-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163, 판례집 31-2상, 573, 577-579
-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당 사 자】

- 청 구 인 1. 이○○(2021헌마853)  
          대리인 변호사 김경태
- 2. 김○○(2021헌마1294)  
          대리인 변호사 한광일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1헌마853

(1) 청구인 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11. 22.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8).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66), 2021. 4. 16.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2849).

(2) 청구인은 2021. 7. 19.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마1294

(1) 청구인 김○○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0. 8. 13.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838).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2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325), 2021. 9. 30.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9433).

(2) 청구인은 2021. 10. 20.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그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은 위 조항 중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하고, 특별히 연혁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나 행위대양의 특성, 불법성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은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 중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같은 호에서 함께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이를 매개하는 행위보다 불법성이 낮고,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죄보다도 불법성이 낮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쟁점 정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 즉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가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관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고, 청구인들의 위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위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3) 청구인 김○○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같은 호의 다른 금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

람보다 불법성이 낮음에도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신상정보가 10년간 보존·관리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와 같은 호의 다른 금지행위 사이의 비교는 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4) 위 청구인은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보다 불법성이 더 높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자가 2020. 6. 2.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취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평등권 침해 주장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특정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면 그 대상자의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재범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파악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등 참조).

(2) 침해의 최소화

(가) 1989.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작되었는데, 1994. 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4. 15. 성폭력처벌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또 성폭력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각종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법정형의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성범죄의 폭력성에 대한 재인식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단순히 성도덕·윤리관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은 성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참조).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왜곡된 성(性)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에 비하여 범위가 좁고,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다) 또한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등과 같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된 다른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어서 이러한 제도만으로 성범죄의 재범 억제와 수사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헌재 2023. 9. 26. 2020헌마1606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라) 이 사건 등록조항이 재범 방지 및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 도모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등 참조).

(마)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이 사건 범죄의 행위 태양이나 그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1차적으로는 그 아동의 전 생애에, 2차적으로는 그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이러한 범죄는 모두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개별 행위별로, 또한 위 금지행위의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신상정보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대상 신상정보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되는 신상정보의 종류를 한정하여(제43조)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억제하는 한편, 신상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제46조 제1항) 그 이용목적을 한정하고 한정된 범위의 기관에게만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며(제48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있고(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의2 제2항, 제3항).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사)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등록·보존·관리된다. 그러나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로 인한 불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상

정보가 보존된다는 자체만으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또 등록된 신상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관련자에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당사자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4) 소결론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163 결정 및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결정에서 이 사건 관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화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로 달리 하였다. 이는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각 등록기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45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르면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성실히 마치고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관리조항에 의하여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11.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2021헌마886]

【판시사항】

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고,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료법 제43조 제2항 등에 따라 한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심판대상조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7. 12. 27. 2004헌마1021, 판례집 19-2, 795, 806  
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판례집 35-1상, 838, 854

**【당사자】**

청 구 인 의료법인 ○○  
대표자 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송정섭 외 5인

**【주 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주소 생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병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21. 4. 26. 위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신병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6. 11.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

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2021. 7. 1.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22.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 외에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한 독자적인 위헌 사유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련조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③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이 있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의하여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반면,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취지는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루는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 주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

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2)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고,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이며,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라고 각각 정의하여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09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을 통하여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은 면허종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신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009년 개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양병원은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및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고, 위 의료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정신병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것, 즉 협진(協診)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나) 이후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2020년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였다. 2020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제4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를 두어 치과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2020년 개정 의료법 제43조 제3항은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에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한의과 진료과목에 대한 추가 설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이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될 때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규정한 취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의료법이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신병원은 의과, 치과 진료과목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아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정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 진료과목의 추가 설치·운영은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2020년 개정 의료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다도,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별도로 분류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을 비롯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법목적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의료행위가 그 지식과 기술에 있어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진은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도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양·한방 의료의 병행이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임상사례도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마1021 참조).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순차 또는 교차로 양·한방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서 서로의 의료행위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고, 의료행위의 중복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도 쉽다. 의료법이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제33조 제8항 단서)이나, 정신병원 외에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제43조 제1항)도 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71,943명이고, 이들의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은 39,068명, 1~3개월은 21,197명, 3~6개월은 10,152명, 6개월~1년은 6,364명, 1~3년은 4,688명, 3~5년은 1,414명, 5~10년은 935명, 10년 이상은 227명이며, 재원기간의 중앙값은 28일로,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인 30,272명은 비자의적 입원으로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접근·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하여 낮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의과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3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 8]에 따르면,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 사이의 협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방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반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이 가능하다.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와의 협진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마) 더욱이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한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면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에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

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고,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 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2025. 1. 23. 2021헌마1192]

###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시 발생 기간에 오리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시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농가가 입게 되는 경영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가 살처분 명령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한 농가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방역조치에 불과하여서 별도의 소득 지원이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상금조항은 가축사육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살처분 보상금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보상금조항만으로도 살처분 보상금의 수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될 수 있고,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가축평가액의 상한선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고시조항은 적용 대상인 가축의 종류와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처분한 가축의 시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가축사육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문】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고,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19. 1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로 개정되고,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시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9. 8. 27. 법률 제1653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 2023. 7. 11. 개정) 제4조 [별표 1]

【참조판례】

- 라. 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판례집 26-1하, 88, 94-95
- 마.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판례집 10-2, 927, 952
- 헌재 2015. 10. 21. 2014헌바170 판례집 27-2하, 44, 55
-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공보 332, 799, 803

【당 사 자】

- 청 구 인 1. 임○○
- 2. 임□□
- 3. 문○○
- 4. 이○○
- 5.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회장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주 문】

- 1.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 하한다.
- 2.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은 2021. 6. 21.경, 청구인 임□□

은 2021. 8. 6.경, 청구인 문○○은 2021. 8. 11.경, 청구인 이○○은 2021. 9. 17.경 각 가축사육업(닭·오리) 허가를 받아 육용오리를 사육하면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① 살처분 명령 등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들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②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또는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의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 ③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④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발생 시 오리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동제한명령이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자의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전체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정한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한 오리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 산정 기준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각각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는 고유의 위헌 주장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



된 것)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 ③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고,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마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④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19. 1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로 개정되고,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3호 중 ‘AI 발생 시 오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 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회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보상금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제3조의4 제5항,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고,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마.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시·군·구 단위로 판단한다): 가축평가액 전액
    -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 3)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

하는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90

4) 그 밖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2019. 11.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로 개정되고,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3. 구제역·AI·ASF 발생 시 가격 적용

구제역·AI·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시세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보상금조항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동제한명령이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농가 또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부화장 운영자 등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또는 영업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는 살처분 보상금의 수준이나 그 상한 또는 하한,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감액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방적 살처분 이행 후 음성판정을 받기까지 출하지연이나 입식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에 관련된 오리를 살처분한 자에게 살처분 당시 오리의 시세가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등 참조).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이동제한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단법인 ○○협회의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이 사건 감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참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이 사건 감액조항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 임○○, 임□□, 문○○, 이○○(이하 '청구인 임○○ 등'이라 한다)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이 사건 감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등의 이 사건 감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임○○ 등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보상금조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고시조항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이라 한다)가 청구인 임○○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기에 사육하던 가축을 출하하거나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사육비용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농가가 소유하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6. 29. 2020헌마1669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가축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고시조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고시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참조).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시행령조항 및 고시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육용오리농가가 경영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평등권 또는 재산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이와 같은 주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보상금조항

(1)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가축,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그리고 농장을 출입하는 야생동물 등을 통하여 인근 농장의 가축과 야생동물, 나아가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이나 물품 등을 가축사육시설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

이고(제19조 제1항 및 제28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는 조치로서(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역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나)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농가는 출하지연, 입식지연, 조기출하 등으로 인한 경영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즉,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추가 사육비용의 발생, 과밀화된 사육으로 인한 폐사 증가, 체중증가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 신규 가축 입식 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 조기출하로 인한 사료 잔량 구입금액에 상당하는 손실 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가축의 반입이나 반출을 제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일 뿐, 살처분 명령과 같이 국가가 해당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폐업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가축사육시설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2021. 5. 제정된 것)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해 입은 출하지연, 입식지연 또는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분을 보조하여 왔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제49조 제2항), 이동제한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농가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득안정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2024. 5. 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5호로 제정된 것)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관리·보호·예찰 방역대 지역 내 또는 역학 관련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로 사육한 자)로서, 출하지연농가, 입식지연농가, 조기출하농가는 모두 소득안정비용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참조). 출하지연농가의 경우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분, 상품가치 하락분의

총합을 지원받게 되고, 입식지연농가의 경우 미입식 마릿수, 마리당 소득,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조기출하농가의 경우 사료잔량에 구입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제4조 제2항 [별표 1] 참조). 소득안정비용은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명령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제5조 참조).

그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동제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소득 지원이나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대를 설정하고 각 방역대별로 방역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축, 물품, 사람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역조치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하 ‘방역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르면,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발생농장 안의 오염물 또는 오염의심물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8일이 경과한 후 항원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 관리지역,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제23조 제4항 참조).

반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방역대 구분 없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통제하는 광역적이고 한시적인 방역조치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제2항). 더욱이 사료의 공급이나 가축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부화된 초생추가 장기간 부화장에 계류되어 폐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소득 등 방역조치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제4장 4. 참조),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소유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최대 96시간의 범





위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방역조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가축소유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도 경미하므로, 이동제한명령과 달리 별도의 소득 지원이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사람들을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입법부작위 부분은 청구인 임○○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3헌바110 결정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0. 4. 12. 법률 제10244호로 개정되고, 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이하 ‘구범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살처분 보상금의 금액은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평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소유자의 귀책사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수준에 따른 소유자의 방역 협조의 경향, 전염병의 확산 정도, 당해연도의 가축 살처분 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범 조항은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주체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정하고 있고, 살처분 보상금의 차등지급 사유도 관련조항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범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방역조치 의무 등 위반에 의한 차등지급의 구체적 기준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의 상한과 하한이 정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살처분 보상액은 재산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특성상, 재산권을 상실할 당시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정해질 것이므로 보상액의 상한이 가축의 평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작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조문

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구범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조항 중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고시조항

(1) 심사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에 속한다(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그러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이러한 조정적 보상의 일환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바17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고시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한 규율이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하기로 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가3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8조 참조).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이하 '예방적 살처분'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써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려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이다.

(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원칙적으로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시·군·구에 보상금 평가반을 두고 있고, 평가반의 반원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3항). 또한 가축평가액은 위와 같이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한 가축 등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 공판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제6조 제1항, 제2항), 보상금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

(다) 한편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의 완전한 소멸을 확인하고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수성 동물의 축사 내 재입식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방역실시요령 제33조 제1항 참조).

청구인 임○○ 등은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후 음성 판정이 난 농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가축의 재입식이 제한됨에 따른 경영 손실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은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방역조치이므로,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후 음성 판정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농장이나 그 주변 지역에 잔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의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에게도 살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감수성 동물의 축사 내 재입식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살처분 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부담을 완화,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실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9조 제1항), 가축의 소유자는 살처분 그 자체로 인한 손실 외에 다른 경영상의 손실에 대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 또한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81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카목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호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가축평가액의 상한선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합리적 기준으로 부담 완화 및 조정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고시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이 사건 시행령조항 참조), 가축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카목 참조).

이 사건 고시 제4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육용오리의 경우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조사·계재하는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일 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별표 1] 참조). 다만 이 사건 고시조항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기간'에 오리에 대하여는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기간'이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초 발생일부



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를 의미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상한으로 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나) 청구인 임○○ 등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과소보상 또는 과다보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대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주로 분변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지만,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 차량·사람·물품 등에 오염되어 이를 매개로 전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염된 쥐나 야생 조류의 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되기도 하며, 야생 철새의 이동경로를 따라 전파되는 등 전파력이 강하고 확산의 범위도 광범위한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야생조류나 오리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은 미미하나 약 30일 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가축전염병에 비하여 살처분의 범위가 넓고 살처분에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인 가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살처분 실시 당일의 산지거래가격 등 가축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기간 동안 육용오리의 가격은 수급불안정으로 폭등하기도 하고, 인수공통감염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크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하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해당 가축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가축을 살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을 산정하게 한다면, 동일한 방역대에 속하는 가축 소유자 사이에서도 살처분 시점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보상금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고시조항이 살처분한 오리의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정함에 있어서 살처분한 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 대상인 가축의 종류(오리)와 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이 사건 고시조항은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

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처분한 가축의 시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조항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산정방식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등의 이 사건 감액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임○○ 등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가축전염병 예방법(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 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2019. 8. 27. 법률 제1653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



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24. 3. 5. 대통령령 제342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각호 생략)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 3. 구제역·AI·ASF 발생시 가격 적용
  - 구제역·AI·ASF 발생 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에 관련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생산물(우유·알)에 대하여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월 평균시세가 전년도 동월 평균 시세와 비교하여 ±15%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월의 직전 3개월 평균 시세로 한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2021헌마1194]

####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 ○○협회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제17조의 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감액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이하 ‘입식제한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입식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명령, 보상금 감액 결정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동제한조항, 살처분조항 및 감액조항은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명령 또는 보상금 감액 결정을 매개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모든 축종이나 품종에 대하여 동일한 입식 및 출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입식시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식제한조항이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만 일제 입식 및 출하기준이나 입식제한기간 준수 의무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입식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일제 입식 및 출하는 서로 다른 연령의 가금이 섞여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백신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며, 농장의 위생상태를 최적화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14일 이상의 입식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더욱이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는 일 년 내내 입식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기에만 입식제한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입식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가축사육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방역기준의 위반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감액조항만으로는 방역기준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조항 외에 과태료 조항을 둔 것이 과잉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가축사육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 및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

**에 관한 부분**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로 개정되어 2023.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

**【참조조문】**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6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 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판례집 22-2하, 150, 170
-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판례집 30-1하, 201, 210
- 라. 헌재 2014. 4. 24. 2013헌바110, 판례집 26-1하, 88, 94
- 마. 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판례집 27-2상, 85, 93-94

**【당 사 자】**

- 청 구 인 1. 임○○
- 2. 임□□
- 3. 문○○
- 4. 이○○
- 5.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회장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이형찬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및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로 개정되어 2023.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은 2021. 6. 21.경, 청구인 임□□은 2021. 8. 6.경, 청구인 문○○은 2021. 8. 11.경, 청구인 이○○은 2021. 9. 17.경 각 가축사육업(닭·오



리) 허가를 받아 육용오리를 사육하면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과,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은, ①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보상을 감액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②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및 제57조, ③ 가축전염병이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이하 ‘예방적 살처분’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④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로 하여금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제4호 차목, ⑤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제5호, ⑥ 이동제한명령의 서식 등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만 위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이 퍼질 것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만 위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및 제57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5호 및 제22조에 관하여는 고유의 위헌주장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이하 ‘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단서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부분(이하 ‘살처분조항’이라 한다) 및 ③ 제48조 제3항 제1호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감액조항’이라 한다), ④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 ⑤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로 개정되어 2023.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이하 ‘입식제한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이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역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보상금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1. 제5조 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6항, 제17조 제1항·제2항, 제17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 제1항을 위반한 자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20. 2. 4. 법률 제16934호로 개정되고, 2023. 9. 14. 법률 제19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의9. 제1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로 개정되어 2023.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조항]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고, 2021. 4. 13. 법률 제1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동제한조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예찰지역 내 주요 방역조치’로서 가금류 가운데 오리에 대하여서만 반입 및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동제한기간의 상한이나 하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동제한조항은 이동제한명령의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살처분조항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살처분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 등을 법률에서 정함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감액조항 및 과태료조항은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행위에 중복된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실령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제재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라.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축사별 또는 동별로 순차적으로 입식 및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식제한조항은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로 하여금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축종에 따라 전염병의 종류가 다를 뿐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 위험은 모든 가축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입식제한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에 대해서만 입식 및 출하를 제한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입식제한조항은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입식제한기간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훨씬 초과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등 참조).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오리사육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입식제한조항의 적용을 받거나 이동제한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단법인 ○○협회의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이동제한조항, 감액조항 및 살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참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등 참조).

이동제한조항, 감액조항 및 살처분조항은 이동제한명령이나 보상금 감액 결정,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라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집행행위를 매개하여서만 비로소 청구인 임○○, 임□□, 문○○, 이○○(이하 ‘청구인 임○○ 등’이라 한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등의 이동제한조항, 감액조항 및 살처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임○○ 등의 심판청구 중 입식제한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입식제한조항

(가) 청구인 임○○ 등은 입식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입식제한기간의 준수가 강제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한편, 입식제한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가축의 신규 입식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므로 입식제한조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임○○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청구인 임○○ 등은 구제역에 취약한 가축에 대하여도 일제 입식 및 출하와 같은 제한조치가 필요함에도, 입식제한조항이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방역은 질병의 종류나 대상 가축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나 방식이 상이하므로,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가금류와 구제역에 취약한 가축은 서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만 입식 및 출하를 제한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청구인 임○○ 등은 입식제한조항으로 말미암아 축사나 동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어 그 사용 및 수익을 제한받고 있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참조). 입식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임○○ 등이 소유하고 있는 축사나 동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소유하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입식제한조항이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6. 29. 2020헌마1669 참조).

(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입식제한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과태료조항

입식제한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임○○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입식제한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참조).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제4호는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식제한조항은 입식 및 출하 기준과 입식제한기간을 정하고 있다.

일제 입식 및 출하는 동일 연령의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하는 농장 관리 방식이다. 입식제한기간은 가축을 출하한 후 일정 기간 신규 가축을 입식하지 않고 휴지기를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역기준은 서로 다른 연령의 가금이 섞여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동일 연령대의 가금에 대하여 동일한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신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며, 가축을 동시 출하시킨 뒤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농장의 위생상태를 최적화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입식제한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서 부령에 위임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에 해당하므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

(다) 청구인 임○○ 등은 입식제한조항이 가금류 가운데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만 종전에 없던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입식제한기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 제4호는 신규 가축의 입식 및 거래 시에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모든 축종이나 품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입식 및 출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거나, 입식 및 출하의 방식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하위법령에서 가축전염병의 종류나 특징, 가축의 축종 및 품종별 사육방식이나 사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의 방역기준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식제한조항이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만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준수 의무를 두었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입식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입식제한조항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입식제한조항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제 입식 및 출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14일 이상의 입식제한기간을 두도록 한 것은, 농장 내 오염원의 유



입을 최소화하고 입식 전 청소,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가축전염병은 함께 사육하고 있는 가축,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그리고 농장을 출입하는 야생동물 등을 통하여 인근 농장의 가축과 야생동물, 나아가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가축전염병은 발생하게 되면 빠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발병한 후에는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이나 유입 경로 등을 파악하여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각 축산 농가에 부여되는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의무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전염병의 특성, 전파가능성의 정도, 전파속도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동일한 가금류라 하더라도 축종이나 품종이 다르고 유전자가 달라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취약정도나 증상이 다르며, 가축의 사육목적에 따라 사육방법 및 유통시스템도 다르므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축종이나 품종에 따라 적용되는 방역기준은 다를 수 있다.

가금류 가운데 육계 및 육용오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특히 감수성이 높은 품종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가금류에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사료섭취 감소, 급격한 산란을 저하 및 폐사를 일으키고,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어 전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적·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커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에 따르면,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46개 가운데 닭 농장은 25개이고 오리 농장은 18개로, 닭과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염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육용오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더라도 그 임상증상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농장주들에 의하여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임상증상이 없어도 분변으로 약 30일 간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미 증상이 드러난 가축에 대한 치료나 살처분만으로는 무증상 가축들을 통한 전파를 막을 수 없게 된다.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전염원인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시 다른 계약사육농가의로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수천만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일제 입식 및 출하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에 대한 일제 입식 및 출하기준, 입식제한기간에 관한 내용이 도입되었다.

같은 입식 및 출하는 농가의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일제 입식 및 출하를 통하여 서로 다른 연령의 가금이 섞여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동일 연령대의 가금에 대하여 동일한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신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축을 동시 출하시킨 뒤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농장의 위생상태를 최적화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규율대상인 가축의 축종(닭·오리)과 특성, 가축전염병의 발생빈도, 유입시기,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감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은 가금류가 무리 생활을 하는 경우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Article 10. 4. 1. 참조).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는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4)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제5호의 위임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22. 3. 25.)은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로 하여금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을 준수하되,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에 한하여서만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12. 일제 입식·출하기간 조정 I. 기본원칙). 이는 매년 10월

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해외에서 도래하는 겨울 철새로 인하여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 기간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육계 및 육용오리농가는 일년 내내 입식제한기간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정 시기에만 입식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입식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농가는 적정 규모의 공간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을 진다. 또한 14일 이상의 입식제한기간을 두는 것은 사육 회전수를 감소시켜 해당 농가에 경영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된 방역수칙을 통하여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은 입식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입식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라) 소결

따라서 입식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임○○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7조의6 제1항 제4호). 과태료조항은 이와 같은 방역기준 준수의무를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가축의 건강은 물론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기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

해하는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입법상의 결단을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참조).

(나) 과태료조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 자체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방역기준의 위반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경우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나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물론 인근 농장의 가축과 야생동물,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과태료조항은 과태료 액수를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과태료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 방역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거나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 임○○ 등은,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감액조항 참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거나 과잉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 처분을 하는 것과 행정법상 질서별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감액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필요적 손해액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의 손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손해조항만으로는 방역기준의 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조항 외에 과태료조항을 둔 것이 과잉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태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과태료조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가축 소유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한 것인 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정한 방역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될 공익은 매우 크므로, 과태료조항은 법익의 균형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임○○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임○○ 등의 입식제한조항 및 과태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임○○ 등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